第301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6月22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13.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審査된案件

113.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 13
1. 현안보고 ····· 20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정권·이한성·여상규·최철국·김성곤·박대해·주광덕·조전혁·신영수·임동규·이해봉·윤석용·안효대

・김성태・조윤선・이화수 의원 발의) ····· 58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이윤성・허범도・김성회・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강성천・이경재 의원 발의) ····· 58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창수・심대평・류근찬・김용구・박선영・이재선・이명수・노영민・정하균・권선택 의원 발의) ····· 58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재윤・김춘진・박은수・이찬열・신낙균・장세환・장병완・양승조・최영희・안민석・김영진・이미경 의원 발의) ····· 58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장병완・이석현・최종원・권영길・정동영・박영선・조영택・안민석・서갑원・최문순・정장선・강창일・전병헌・김성곤 의원 발의) ····· 58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홍희덕・최문순・김진애・정장선・이찬열・박은수・김상희・홍영표・추미애・이용섭・김재윤・강기정・원혜영 의원 발의) ····· 58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금래・김소남・장윤석・황영철・유원일・박대해・이한성・허태열・이은재・이경재 의원 발의) ····· 58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466) ····· 59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41) ····· 59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박보환・김금래・임두성・유성엽・이화수・안상수・박종희・정해걸・박상돈・이명수 의원 발의) ····· 59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심대평・서종표・김장수・류근찬・유승민・김무성・김성회・송민순・강성천・이진삼・변웅전・권선택・정영희・임영호・김창수・이재선・김낙성・황우여・이화수・이명수・이영애・김충조・정하균・안상수・백성운・강성종・김성수・박종희・박선영・김옥이 의원 발의) ····· 59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강명순・고승덕・이한성・박기춘・안상수・김태원・유원일・김성수・임영호・남경필・원희목・우제창 의원 발의) ····· 59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강성천・박대해・박준선・안효대・유정복・이명규・이종혁・이학재・이화수・한선교 의원 발의) ····· 59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강창일・김영진・송민순・김동철・주승용・최철국・박은수・노영민・양승조 의원 발의) ····· 59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최문순・유원일・이찬열・김영진・김재윤・안홍준 의원 발의) ····· 59
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정장선・김진애・최문순・이강래・김춘진・우제창・조정식・김동철・이낙연・김재균・양승조・안규백・이찬열・김상희・전혜숙・신학용・이성남・박선숙・최영희・최규성・백재현・박은수・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810) ····· 59
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최철국・박은수・백원우・최영희・이미경・조정식・김영록・안규백・박주선・양승조・최문순・전현희・김재윤 의원 발의) ····· 59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신학용・이한성・진성호・조진래・정의화・이화수・권성동・성윤환・김성태 의원 발의) ····· 59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

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59
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59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세연・김우남・안민석・안형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용섭・이찬열・이한성・이화수・조배숙・조영택・조원진・최규식・최영희 의원 발의) ……59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이성남・조경태・이찬열・양승조・송민순・최영희・신낙균・조정식・이정현・박영선・김재윤・김성곤・박은수・홍영표・이미경・최재성・이춘석・최문순 의원 발의) ……59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안민석・조승수・신학용・강창일・김재균・김재윤・오제세・백재현・서갑원・김성곤・추미애・조영택 의원 발의) ……59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우남・박은수・최철국・이명수・이인기・유원일・우제창・전현희・노영민・이낙연・양승조・김성곤・유선호 의원 발의) ……59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재윤・김춘진・박은수・이찬열・신낙균・장세환・장병완・양승조・최영희・안민석・김영진・이미경 의원 발의) ……59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유선호・박영선・이윤석・전병헌・홍희덕・이춘석・이찬열・이미경・신학용・김진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7) ……59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박순자・김효석・주광덕・이인기・유성엽・김태원・안홍준・이한성・권영진・최경희・임영호・유원일・홍일표・강성천・원희룡・이정선 의원 발의) ……59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전병헌・김영진・박영선・박우순・김재윤・김진표・최인기・김동철・강창일・김재균・강기정・김영록・안규백・안민석・정동영・신낙균・문학진・이종걸・최문순・송민순・정세균・홍영표・추미애・원혜영・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78) ……60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용구・임영호・김영록・우제창・이용섭・김춘진・김창수・최문순・정장선 의원 발의) ……60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동철・박영선・정동영・오제세・천정배・이종걸・전병헌・원혜영・강기갑・홍재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41) ……60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강용석・김정권・현경병・신상진・이한성・최병국・이용희・원희목・김정 의원 발의) ……60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경재・정해걸・이두아・윤영・조원진・황우여・이명수・김광림・김금래 의원 발의) ……60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3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이상민・심대평・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이성헌・박선영・박상돈 의원 발의) ……60
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손범규・김소남・박준선・장세환・이화수・김금래・김옥이・이정선・황영철 의원 발의) ……60
38.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인기・유승민・성윤환・박종근・이찬열・유기준・임영호・박대해・정갑윤・구상찬・이한성・조승수 의원 발의) ……60
3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강기정・양승조・최재성・조경태・김재윤・김동철・최규식・김효석・안민석・이종걸・전혜숙・송민순・신건・박선숙・문학진 의원 발의) ……60
4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강석호・이종혁・전여옥・윤상현・임동규・이명수・백성운・장광근・나성린・홍영표・고승덕 의원 발의) ……60

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장병완·이석현·최종원·권영길·정동영·박영선·조영택·안민석·서갑원·최문순·정장선·강창일·전병헌·김성곤 의원 발의) ····· 60
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김세연·김정권·유성엽·김우남·유정현·이해봉·이종혁·정해걸·임동규·강기갑 의원 발의) ····· 60
4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60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김동성·안홍준·김태원·박종희·홍장표·김춘진·송영선·양승조·신낙균·임동규·정갑윤·김동철·양정례·유정현·이한성·정하균·김영진·이진삼·강석호·정장선·이정선·최영희·최인기·김학송·서청원·김희철·홍정욱·김소남·김정훈·김성곤·백성운·박보환·안상수·손범규·오제세·이혜훈·장세환·심재철·배은희·김부겸·강성천·나성린·이해봉·정해걸·김효재 의원 발의) ····· 60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상수·유성엽·박종희·이명수·강석호·이화수·정해걸·조해진·김금래·박상돈·김성태·박보환 의원 발의) ····· 60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 ····· 60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김상희·김재윤·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최문순·원혜영·유성엽·박대해·이명수·이화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9) ····· 60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 60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홍장표·이진복·이한성·최병국·임두성·최구식·안상수·정미경·정해걸·이해봉·오제세·김세연·이성헌 의원) ····· 61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김우남·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김재윤·변재일·유원일·최문순·강성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4813) ····· 61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손숙미·원희목·강명순·임두성·홍정욱·심재철·박영선·김정권·유재중·김효재 의원 발의) ····· 61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임동규·유성엽·김무성·손숙미·김성수·윤영·강명순·윤석용·이성헌·한선교 의원 발의) ····· 61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이해봉·남경필·홍희덕·김세연·이한성·신상진·김성태·조승수·서갑원·유기준·황영철·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1) ····· 61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재윤·정영희·정의화·김영선·이성헌·김태원·안홍준·정수성·이한성·황영철·이인기·신상진·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5) ····· 61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이찬열·안민석·송영길·신건·양승조·변재일·전혜숙·박은수·원혜영·김우남·강기정·이미경·송민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7423) ····· 61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우남·김재균·박선숙·박은수·양승조·우제창·원혜영·유원일·이찬열·이한성·조영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7619) ····· 61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박대해·박순자·이영애·이해봉·현경병·정병국·이한성·조문환·원희목·김성태 의원 발의) ····· 61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 61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최문순·양승조·조승수·권영길·유원일·강기갑·곽정숙·이정희·김재윤·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4) ····· 61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영환·김재윤·이정희·조승수·조경태·주승용·홍희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5) ····· 61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김재윤·김소남·임영호·노영민·김춘진·

박영선・최영희・조승수・최규식・강기정・조영택・유원일・김충환・김동철・김영진 의원 발의) ····· 61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권선택・김성곤・김우남・박선숙・박은수・백재현・송민순・이미경・이석현・이용섭・이찬열・조승수・조영택・최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6) ····· 61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원희목・이인기・조배숙・김성수・이해봉・이정선・손숙미・이성헌・김낙성・김정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777) ····· 61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권영진・유성엽・이해봉・조승수・원희목・현경병・이미경・우제창・홍영표・황영철・김성태・김혜성・이한성・홍희덕・황우여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 61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김소남・추미애・박준선・신영수・장세환・이화수・김금래・김옥이・이정선・손범규・황영철 의원 발의) ····· 61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재윤・김춘진・박은수・이찬열・신낙균・장세환・장병완・양승조・최영희・안민석・김영진・이미경 의원 발의) ····· 61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학용・홍희덕・전혜숙・조영택・조승수・유정현・백재현・안민석・강창일・이성헌・조정식・유원일・김재윤 의원 발의) ····· 61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박기춘・이찬열・김영진・최규성・최규식・박은수・홍영표・정범구・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280) ····· 61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박은수・주승용・이춘석・최철국・이용섭・김재윤・양승조・김상희・안민석・이찬열・백원우・홍영표・이성남・추미애・최종원・최재성・이미경・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757) ····· 62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정권・오제세・강용석・배은희・안효대・김유정・백원우・김태원・홍정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08) ····· 62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최규성・박은수・강창일・김세연・권선택・홍희덕・김우남・김상희・송민순・이미경・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74) ····· 62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조승수・전혜숙・홍희덕・강기갑・이인기・김영진・곽정숙・안홍준・정동영・김재윤・홍영표・권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06) ····· 62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박은수・주승용・이춘석・강기정・정범구・백재현・이미경・김상희・장병완・김재윤・백원우・김유정・양승조・추미애・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2) ····· 62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강석호・이낙연・신학용・전병헌・신상진・이찬열・최규성・박은수・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54) ····· 62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김혜성・조배숙・이정선・신학용・김태원・배영식・김소남・정영희・김정・윤상일 의원 발의) ····· 62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강용석・김정권・현경병・신상진・이한성・최병국・이용희・원희목・김정 의원 발의) ····· 62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78.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홍희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2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박준선・임동규・김금래・김성태・윤석용・이윤성・장광근・김선동・이정선・정양석 의원 발의) ····· 62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신성범・정갑윤・박상돈・김창수・심대평・안형환・조문환・박희태・양승조・원희룡 의원 발의) ····· 62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이한성・강석호・김효재・정해걸・강명순・김유정・이춘식・한선교・이정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7411) ····· 62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부겸·임영호·조승수·김재윤·김성곤·김효석·김상희·김우남·양승조·박선숙·유원일·박선영 의원 발의) ····· 62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정장선·김진애·최문순·이강래·김춘진·우제창·조정식·이낙연·김동철·김재균·양승조·안규백·이찬열·김상희·전혜숙·신학용·이성남·박선숙·최영희·최규성·백재현·박은수·원혜영 의원 발의) ····· 62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조원진·김성수·홍정욱·손숙미·이명규·이한성·원희목·이해봉·박보환·김효재 의원 발의) ····· 62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나경원·김효재·정갑윤·원희목·김태원·강명순·강창일·홍준표·이은재 의원 발의) ····· 62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신학용·이한성·진성호·조진래·정의화·이화수·권성동·성윤환·김성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8179) ····· 62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강기갑·전현희·이한성·강기정·원희목·이용경·양승조·안민석·최문순·김유정·유성엽·조영택·조배숙·우윤근·김재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8223) ····· 62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 62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8451) ····· 63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박준선·안경률·이애주·안홍준·박대해·이한성·황우여·권영진·박순자·권성동·최병국·박희태·윤상현·서병수·이범관·진영·구상찬·박민식·김학송·김무성·박종근·김성식·황영철·강석호·정진석·김장수·홍정욱·정의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2) ····· 63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이성남·조경태·이찬열·양승조·송민순·최영희·신낙균·조정식·이정현·박영선·김재윤·김성곤·박은수·홍영표·이미경·최재성·이춘석·최문순 의원 발의) ····· 63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손숙미·원희목·이정선·이인기·김소남·김효재·유재중·권경석·김을동·서상기 의원 발의) ····· 63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김학송 의원 발의) ····· 63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박순자·김효석·주광덕·이인기·유성엽·김태원·안홍준·이한성·권영진·최경희·임영호·유원일·홍일표·강성천·원희룡·이정선 의원 발의) ····· 63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전병헌·김영진·박영선·박우순·김재윤·김진표·최인기·김동철·강창일·김재균·강기정·김영록·안규백·안민석·정동영·신낙균·문학진·이종걸·최문순·송민순·정세균·홍영표·추미애·원혜영·이찬열 의원 발의) ····· 63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백재현·강창일·조정식·신건·이석현·이낙연·박은수·이춘석·최재성·최영희·김재윤 의원 발의) ····· 63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소남·김정권·김세연·이진복·최병국·강길부·권영진·황우여·김태원·김금래 의원 발의) ····· 63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강창일·박영선·이명수·원혜영·신낙균·유선호·강봉균·이화수·정동영·서종표·문희상·최종원·박은수 의원 발의) ····· 63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 의원 대표발의)(김옥이·박준선·박민식·이한성·장윤석·유승민·박선영·이화수·이학재·김정훈·김충환·김을동·손범규·김성수·이종혁·정하균·윤상현·김장수·안홍준·이정현·심대평 의원 발의) ····· 63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경태·이윤석·이성남·김성곤·김재균·강기갑·유원일·이용희·김낙성 의원 발의) ····· 63
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 63
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이경재·정갑윤·조진래·권영진·이진복·김세연·권경석·나경원·성윤환 의원 발의) ····· 63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최철국·우윤근·원희목·송영길·박은수·양승조·최인기·김영진·최영희·백원우 의원 발의) ····· 63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경석·김부겸·홍희덕·임영호·유성엽·이해봉·김을동·김용구·박선영·최규식·김효재·조승수·김창수·이은재·김재윤·권선택·류근찬 의원 발의) ····· 63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10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이윤성·허범도·김성회·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강성천·이경재 의원 발의) ····· 64
1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학용·홍희덕·전혜숙·조영택·조승수·백재현·강창일·이성헌·이찬열·정범구·박주선·김재윤 의원 발의) ····· 64
1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신상진·현기환·권영진·박준선·원유철·강성천·강용석·정해걸·조진형·안형환 의원 발의) ····· 64
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김세연·송영선·안효대·강석호·조해진·이정선·손범규·박은수·강길부·심재철·이한성·고승덕·장윤석·장광근·전혜숙·임동규·이명수·정미경 의원 발의) ····· 64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서상기·배영식·임동규·이한성·권영진·이해봉·고승덕·유성엽·백재현 의원 발의) ····· 64
1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112.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이한성·이해봉·김성수·권영진·김성태·안홍준·신성범·윤상현·나성린·임영호·이성헌·정병국·손숙미 의원 발의) ····· 64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윤광식 입법조사관입니다.

2011년 6월 17일부터 2011년 6월 21일까지 발생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순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 다섯 분 중 네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유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입니다.

송덕용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인사)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인 여러분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고인 신문은 핵심 참고인인 조남호 회장의 불출석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전체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 출석할 경우 청문회를 생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남호 회장의 불출석으로 청문회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분의 불출석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다음 청문회 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 주시고 다음 기회에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지역구이신 김형오 의원께서 고용노동부 소관 현안사항의 하나이자 지역의 중대한 현안 문제인 한진중공업 노사분쟁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 요구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형오 의원님, 자리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 의원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환노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장 말씀이 있은 대로 해외출장 때문에 조남호 회장이 참석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이자 부산시민이 키운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가 원만하게, 그리고 대화로, 서로 양보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미력이나마 해 왔습니다마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 오늘 부득이 환노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에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하게나마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환노위 소속도 아닌 사람이 또 이런 참고인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자격으로 이례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수십 번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 측에서 특히 경영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조남호 회장은 만나기는커녕 전화 연결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20년 하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이 한진중공업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조남호 회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전화 한 통화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수십 번을 요청했는데도.

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부터 먼저 드리는 것을 대단히 스스로 아주 자괴감이 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기업이 미친 그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폭력적 방법이나 과격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눈감아 주거나 지지하거나 동조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진중공업 노조로부터는 제 선거 때마다 저와는 반대편에 섰고 또 심지어는 낙선운동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노조의 지지를 받고자 또 특별한 무슨 감정이 있거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노조 측과 사 측에 대해서 비공개로 만나는 것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방식보다는 비공개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 측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번 파업은 노조의 주장은 있지만 사 측의 해명이 없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해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기회조차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극적 타협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가

까워 오면서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 측은 일방적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생활공간인 사원 아파트까지 비우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비정한 기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노조는 이에 맞서서 크레인 점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화·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권유했지만 끝내 사 측은 대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불참했습니다.

노조 양보를 저는 요구하기도 했고 노조에게 나무라기까지도 했습니다. 세 번의 성명도 내었고 특별히 또 기자회견까지도 해서 사 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차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사 측에 대한 경영문제에 대한 조사와 검찰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관련 장관에게도 강력하게 사태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인 개입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진전된 것은 오늘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조남호 회장의 선친이신 조중훈 회장님을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난히 강조하셨던 본받을 만한 기업인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조남호 회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현안 논의를 위해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 온 국민이 다 아는 현안을 놓고도 공개적으로 나서지도, 비공개적으로 얼굴조차도 보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전화통화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 회장의 불참은 매우 고의적인 것으로 밖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 출국이라고 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와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조남호 회장에게 이 국회 앞에 당당히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 측의 주장이 옳고 노조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진중공업은 지금 일할 것이 없습니다. 수주물량을 단 한 건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를 부득이 해고한다고 사 측은 하고 있습니다.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노동자의 책임입니까, 경영자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 경영의 총책임자인, 소위 말해 사주인 오너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탓인지 경영자의 탓인지 조사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영의 책임을 져야 될 사주는 보호되고 노동자만 집단해고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이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노사 간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연례적 행사처럼 파업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노사 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불똥은 언제나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타협의 산물인 임금인상분이나 기업이윤이 경영 노하우나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의 방법으로 메워졌습니다.

노조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더욱 불쌍한 이 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눈물로 지새우고 결국 실직의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고 지역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그간의 하청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야 됩니다. 물론 공정거래위나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제소된 여러 건의 부당행위 제소에 대해서 이때껏 단 한 건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의 횡포가 그만큼 더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법을 빙자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부족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대기업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 땅의 공직자들도 이제는 낯 뜨거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 측은 사기업에 국회가 왜 간섭하느냐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진중공업은 조남호 씨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임직원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키운 우리 모두의 기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조의 과격행위, 집단행위, 불법활동을

두둔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주, 소위 회장의 경영 부실과 무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들에게만 짐 지우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단 한 건의 물량도 확보하지 못한 경영주는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부산 시민이 키운 기업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이렇게 해서 부산을 떠나려고 합니다. 부산의 최대 기업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기고 있는지 우리 국회와 그리고 관계기관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김형오 의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홍영표 위원 아니,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환노위 지금 의사진행에 오늘 들어가 있지도 않고 우리 고용노동부 현안질의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형오 의원님한테 이렇게 발언을 주고 말이지요, 장시간.

지금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무슨 김형오 의원님, 한 의원 개인의 그런 발언을 듣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아, 그건……

○홍영표 위원 회의하는 중에 저희가 그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와서 발언하시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노위원회에서 2월, 4월 공전된 이유도 한진중공업 청문회, 이런 걸 안 해서 공전이 됐고 우리 환노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오늘도 그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와서 참고인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회를 줘서 발언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다 모아 놓고 무슨 개인 연설하는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사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건 말이지요.

아니, 그건 사과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홍영표 위원 아니,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지금 저희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이 회의를 하려고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다 나와 있고, 저 한 개인의 이야기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아니, 일정을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정진섭 위원 전직 의장인데……

○위원장 김성순 예, 그건 좀 양해를 해 줘야지……

○홍영표 위원 아니, 양해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건 오늘 중요한 우리 관심사중의 하나 아닙니까?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위원장 김성순 그래서 자신의 지역구이고 또 전직 국회의장이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해도 괜찮고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도 알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걸 무슨 뭐 다른 자기 개인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홍영표 위원 저는 김형오 의장님이 이렇게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렇지.

○홍영표 위원 동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순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냥 진행합시다.

○이미경 위원 간사의 의견을 서로 간에 듣고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간사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김성순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어요.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회의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김형오 의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아, 그 순서는 사실은 뒤의 현안보고가 끝난 다음에, 현안보고 들은 다음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직 국회의장이고 하니까 뭐 기다리게 하기고 그렇고 우리가 그 정도 예의 갖추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잘못이다, 위원장이.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 정도는 좀 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그런 생각에서 했으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

113.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10시48분)

○위원장 김성순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113항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청문회 실시 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문회는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1일간 실시하되 그 절차로 청문회의 개회, 위원장의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이재용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박유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최우영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 등 총 4인이고 참고인으로는 송덕용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입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상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위원장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이 계획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없습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순 예, 홍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예,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오늘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고 계시지만 참고인 신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기로 되어 있었던 조남호 회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가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7월 2일 날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국회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에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해외에 도피성으로 나갔던 회장의 일정에 맞춰서 7월 5일 날 청문회를 결정한 것은 저는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어떠한 그런 화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영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노동자들의 이런 아픔을 뒤로 하고 국회에 출석마저 거부하고 해외에 나간 일개 회장에 대해서 귀국일정을 맞춰서 날짜 잡는 것은 이건 우리 국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능한 빠른 27일이 됐든 28일이 됐든 그렇게 일정을 잡고 그때도 조남호 회장이 귀국하지 않았을 시는 고발조치 등 뭐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취하고 차후에 또 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 예, 제가 말하지요.

○위원장 김성순 예, 정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날짜는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김형오 전 의장께서도 조남호 회장의 오늘 불출석을 이건 해외 도피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오늘 6월 22일 날 청문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듣기로 한 것은, 노사 양측 얘기를 듣기로 한 것은 여야 간사 협의과정에서 조남호 회장이 자진출석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조남호 회장은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자진출석하겠다고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뭐 해외에 갔다, 명명백백하게 이 자리 안 오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김형오 의장께서 도피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보기에 명백한 국회 우롱입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 원래 합의대로 6월 28일 날 청문회 개최를 해야 합니다. 청문회 개최를 결의하고 그래서 조남호 회장이 그 도피성 출국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본인이 22일 자진출석한다고 했는데 국회를 우롱했고 그다음에 28일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저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28일 안 나오면 그 뒤에 다시 날짜를 협의해서 7월 5일이든 뭐 7월 10일이든 8월 5일이든 계속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나는 끝까지 이걸 해야 국회 그렇게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사람에 의해서 권능이 짓밟히는 걸 최소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조남호 회장이 나갔으니까 7월 2일 날 오니까 7월 5일 날 합시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래서 원래 합의대로 6월 28일 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전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지금 자진 출석을 전제로 한 참고인인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지금 한진중공업의 역외탈세 의혹에 관한 국세청 진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도 청문회에 부르고 그다음에 수주를 아까…… 지금 다른 조선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조선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진중공업만 0입니다, 제로.

그런데 그 담당자가 조남호 씨 아들이에요, 아들. 조원국 상무, 그 아들 불러야 됩니다, 영업담당 상무. 수주는 제로인데 월급은 2억에서 3억으로 1억 올리고 12월 15일 날 정리해고 400명, 명예퇴직으로 해서 400명 잘라 내면서 12월 16일, 하루 뒤에 174억 주식배당하고…… 이런 행태가 재벌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조남호, 조원국 이 자리에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2월 1일 자로 현금배당 52억, 돈 잔치하면서 170명 정리해고와 400명의 퇴직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8개월, 6개월 국민들 걱정 끼치고 심지어 그 지역의 의원이자 전직 국회의장이고 한나라당 중진 의원인 김형오 의장이 오셔서 정부에 '이것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조남호 회장 개인 통보에 따라서 '7월 2일 날 들어오니까 7월 5일 날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날짜는 6월 28일 원래 합의대로 청문회 개최하고 통보해서, 반드시 귀국해서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오면 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그리고 다시 그다음 청문회를 통해서 끝까지 조남호 회장 불러내고 증인으로 국세청장 또 아들 조원국 상무, 그 밖에 청문회에 나올 다른 증인들, 청문회 증인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미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경 위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증인 요청이 변경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청문회로 전환이 되면 '과연 경영상 불가피한 해고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지 되고 그것은 조남호 회장한테만 물어 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와야지 된다, 그래서 세금은 얼마 냈는지, 또 지금은 조선업이 호황을 맞이해 있는데 수주를 이렇게 제로로 받은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야지 심도 깊은 청문회가 될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남호 회장 오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전혀 대화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재벌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놀랐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전직 국회의장인 김형오 의장의 면담요청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고 전화조차도 받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증인을 제대로 요청을 해서 정해 놓고 이 청문회를 열어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진섭 위원 위원회에 새로 와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가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용이 정해지고 오늘 우리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개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다 다시 개진을 해서 이거를 다시 다 모아 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좀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사전에 좀 조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 운영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저는 이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고인들을 불러서 오늘 우리가 이걸 다루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남호 회장이 안 나오면 당신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순 아, 그런 고지는 없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성순 왜 그러느냐면……

○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분들은 국회에 와서 자기가 생각한 바를, 자기가 지득한 바를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오는 그런 관계고 또 우리 의사 관련된 여러 사람들도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안 왔다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다 무산시키는 이런 것도 좋은 관례는 아니다, 차라리 이분들을, 오신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해서 그거를 파악해 놓은 상황에서 또 청문회를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당신들은 필요 없으니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고 또 청문회를 새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 운영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남호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분이 안 나오면 뭐 고발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충분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참석하신, 자의에 의해서 참석하신 저분들에 대한 신뢰는…… 국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런 것은 의사운영이 원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먼저 간사 간의 협의를 잘 운영해서, 우리가 많은 현안을 앞에 두고 이런 문제로 시간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또 우리가 이런 선행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金容九 委員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金容九 委員 이게 정해진 게 여야 간, 두 당 간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위원장 김성순 예.

○金容九 委員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날짜요?

○金容九 委員 그건 합의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성순 날짜는 여야 간에 합의를 직전에 했어요.

○金容九 委員 합의해서 한 겁니까?

○위원장 김성순 예.

○金容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또 발언하실……

○홍영표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사실 이 한진중공업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올 연초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이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분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청문회도 사실은 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람, 특히 조남호 회장이 나와서 회사 입장을 들어 보고 또 왜 이렇게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어떤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조남호 회장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완전히 도피성 출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 간에는, 지금 7월 2일까지 귀국 예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나서 그러면 반드시 부르겠다' 이런 의지로 말씀…… 그런 뜻에서 7월 5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또 그 지역구에 있는 김형오 의원님까지도 '이것 명백히 도피성 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6월 28일, 6월 임시국회 중에 날짜를 변경해서 부르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만약에 그날도 조남호 회장이 어떤 이유를 대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다시 저희가 청문회를 소집하는 그런 식으로 반드시 조남호 회장이 나와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5일로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당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6월 28일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열어서 한진중공업 문제를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지금 홍영표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여야 간사 합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합의는 해 놓고 회의장에서 바로 이 회의일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여야 간 간사 합의를 했으면 간사회의에서 다시 재합의해서 그 일정을 통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이범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범관 위원 이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도, 여야 간의 협의과정에서도 얘기하고 이 위원회 본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전향적으로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서 민주당하고 간사 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조남호…… 사실은 우리 동료 정진섭 위원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조남호 회장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사안의 진상이 안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민주당에서 '조남호 회장 안 나오면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좋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고 제가 그런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당 지도부하고도 의논해서…… 이걸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남호 회장을 부르는 것이지 조남호 회장이 없다고 우리 국회에서 이 진상이 안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정진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사실 참고인 진술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거는 좀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됐고, 조남호 회장에 대해서도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나오도록. '안 나오면 결국 청문회로 가고 고발하고 이건 내 입장도 똑같고 우리 한나라당 입장이 똑같으니까 나오십시오' 해서 오늘까지 사실 불출석한다는 사람을 제가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홍영표 간사님도 걱정하시는데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실망했습니다. 뭐 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청문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사 측이나 정부 측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충분히 노사 간에 그런 의사가 전달될 것이고 사 측도 정신 좀 차리고 노 측도 불법행위를 자제해서 진정으로 노사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노조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국회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 국

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의사진행에 관해서 우리 강성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야 간에 합의해 놓고 오면 자꾸 우리 상임위 의사일정…… 그러려면 아주 여야 합의, 간사 그걸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자유토론 해 가지고 다 표결로 가든지 좀 이래야지, 해 놓고 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뭐 따로 간사회의 할 것 없이 28일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날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날짜를 7월 5일에서 28일로 하는 거는 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잠깐만요.

그러면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보내야 되거든요.

○정진섭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홍영표 위원 오늘 하면 된다고……

○입법조사관 윤광식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동영 위원 지난번에 28일 된다고 해서 합의한 것 아니요?

○홍영표 위원 아니, 지난번에 28일 날 된다고……

○위원장 김성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정동영 위원 오늘부터 일주일 아니요?

○입법조사관 윤광식 전번에는 20일 날 의결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0일 날 환경부 현안보고 할 때 그때 계획서를 의결하게 되면……

○정동영 위원 입법조사관,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때 22일 날 의결하면 28일 날 된다고 보좌를 한 것 아니요?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돼?

○위원장 김성순 잠깐만요.

○이범관 위원 날짜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때 하더라도 제가 다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29일 날 하셔도 좋고 30일 날 하셔도 좋고 뭐……

○홍영표 위원 29일은 본회의 때문에 안 돼요.

○이범관 위원 하여간 날짜 조정 문제는 저는 큰 저거를 안 두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홍영표 위원 오늘부터 세는 것 아니에요?

○정진섭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따져 보면 되지.

○이범관 위원 따져 봐 가지고……

그것은 간사들 간의 협의에 맡겨 주시지요.

○위원장 김성순 간사 간에 날짜는 좀 협의하시지요.

○이범관 위원 28일, 가능하면 28일 날 하고 아니면 29일 날 하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이게……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사 간 합의를 뒤집은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통보받기로는 오늘 자진 출석이 안 되면 청문회를 28일 날 한다 하는 합의가 여야 간사 합의였습니다. 원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 5일로 간 것은 조남호 회장이, 조남호 씨가 7월 2일까지 해외 간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을 존중해 주어서 받아들인 건데, 심지어 김형오 의장께서 도피성 출국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다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환경노동위가 재벌 회장의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맞추는 겁니까? 본인이 22일 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안 했으면 몰라요.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하나 좀……

우리 이범관 간사님, 조남호 회장하고 통화가 되셨던가요?

○이범관 위원 외국 가 있는 사람하고 통화…… 통화 시도 안 했어요.

○정동영 위원 나온다고 어쨌든 통보는 받은 것 아니십니까?

○이범관 위원 예.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조남호 회장……

○이범관 위원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요, 날짜는 얼마든지 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그 날짜는 양당 간사 간에……

○정동영 위원 저도 한진 조남호 회장 측에 연초에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해서 전화했어요, 비서실에.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일체 연락 없습니다.

아까 말 들어 보니까 안 그래도 여당 실세 중진 의원이신데 수십 차례 전화해도 전화 한 번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한테 이 국회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나는 27일 날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 문제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벌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의제 조율 중인 것 같은데 한진중공업 문제를 여야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아서 청와대에서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영수회담을 통해서 입장을 개진하도록 요청을 하겠고, 어쨌든 위원회로서는 28일 청문회의 날짜와 함께……

지금 노조 측에서 사주가 역외 탈세 의혹이 있다, 수빅조선소로. 지금 현재 확보한 물량만 5조 8000억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 수빅조선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1년에 8800억 매출량밖에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 5년, 6년 수빅에서 하려면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일반 조선사들이 대개 2년 치 수주물량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증인과 관련해서 2009년 이후에 2년 동안 수주물량 제로 책임자인 조남호 회장의 아들 조원국 재벌 3세 상무, 이 자리에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또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 들어야 합니다. 또 조남호 회장, 한진중공업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대물림해서 한진중공업 받았는데 과연 상속세·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국회에 나와서 국세청장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재벌 2세, 3세의 경영승계에 온갖 탈법과 불법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한진중공업은 과연 정당하게 세금 내고 물려받고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 한진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장 또 수주 담당 조원국 상무, 증인으로 꼭 채택해서 6월 28일 청문회 개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상임위원장은 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그때그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유연하게, 무리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양당 간사에게 위임할 수만도 없는 거고 또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게 꼭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참고인을 보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러 명의 증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5명의 증인을 불렀거든요. 그 핵심 증인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보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저는 한진중공업 회장에 대해서 조금도 두둔하거나 옹호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해외 출장이다, 그게 도피성인지 혹시 또 정당한 이유가 그동안에 불가피하게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일자가 7월 2일까지니까 상대방이 틀림없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7월 2일, 그다음 날인 3일은 일요일이고, 그다음은 또 다른 당의 큰 행사가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5일이 적정 날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전적으로 그냥 도피해 간 거다 그렇게 짐작은 되지만, 확신도 가지만, 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증인과 날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이범관 위원 증인 합의는 더 안 해요.

○위원장 김성순 증인 아니고?

○이범관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이범관 위원 날짜는 협의하는데 다는 안 됩니다.

○정동영 위원 부릅시다.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날짜에 대해서는……

○이범관 위원 해 나가면서 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순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되, 그 날짜와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증인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증인은 지금 협의가 이 자리에서 벌써 분명히 안 되는 걸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요.

○정동영 위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이범관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정동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범관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정진섭 위원 의결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순 그래서 날짜만 빼놓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 가시지요.

○정동영 위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날짜도 의결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순 예, 날짜 하지요.

○정동영 위원 날짜 협의와 같이하면……

○이범관 위원 아니,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성순 아니, 그러니까 실시……

○이범관 위원 정동영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입장에서……

○정동영 위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범관 위원 다음에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순 실시 여부는 오늘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날짜……

○이범관 위원 날짜는……

○정동영 위원 날짜와 증인을 협의해 주십시오.

○이범관 위원 아니, 그건 안 된다니까.

○위원장 김성순 그건 뭐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십시오.

○이범관 위원 아니,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하지 마세요. 다시 간사회의 하자고요. 날짜부터 다시 하자고. 저는 오늘 빨리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성순 좋습니다. 그러면……

○정동영 위원 증인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김성순 아니, 됐습니다. 이범관 위원님, 됐습니다. 발언하지 마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시계획서대로 하되 날짜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 위원 증인 협의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순 아니, 그냥 가지요.

○이정선 위원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왜냐하면 이게 쭉 그렇게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잠깐만요.

오늘 자진 출석해서 한 건,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지금…… 청문회를 열 필요 없이 자진 출석하면 오늘 갈음하겠다 하는 선의의 취지로 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인데 사실 고의로 불출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를 우롱한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러면 제대로 청문회를 하려면 청문회는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 자격으로 나와서 위증을 하면 처벌도 받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진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불투명한 것들을 규명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한진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국세청장, 그다음에 지금 정리해고의 핵심이 수주 제로, 2년 동안 수주를 하나도 못한 것의 책임자가…… 조남호 회장은 지금 물어보니까 몇 년 내에 영도조선소에 나타난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주 업무를 총괄한 조원국 상무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리해고 사태에.

그런데 이 증인을 청문회에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좀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이범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범관 위원 그러면요, 정동영 위원님 말씀이시면 다시…… 그러면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간사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지요. 지금 여기서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정동영 위원 지금이라도 협의를 좀 하시면 어때요?

○이범관 위원 또 우리 당 측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지 나 혼자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류를 해 주시고, 이 안건을.

그러면 다시 우리 간사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 봅시다. 그러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실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대로 하되 그 날짜는 29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현안보고

가. 고용노동부 소관

(11시42분)

○위원장 김성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및 소속기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장관 취임 후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주요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지표는 어느 때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동향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또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힘겹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하는 접점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저 자신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대기업, 중소기업 밀집 공단,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현장 방문하면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였습니다.

○정동영 위원 장관, 잠깐만요.

인사말씀 중인데요. 현안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성순 예.

○정동영 위원 ‘일자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러는데, 인사청문회 지난번 할 때 ‘한진중공업 가서 직접 현장에 가시라’, 했더니 다녀오셨지요? 잘 가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인사청문회 때 한진중공업 관련 말씀이 계셨고 제가 간다, 안 간다 말씀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취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녀왔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인사 말씀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대기업”,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한진중공업 방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따가 기회를 주시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계속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면 잘살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체감경기 개선의 근본적 해법이자 따뜻한 공정 사회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에 너무 얽매이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보다 일자리라는 공통분모를 넓혀 나갈 때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와 복수노조 제도도 노사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키우고 상생의 노동권으로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현 노조법은 국제기준을 지키되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노동권을 신장시키면서 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 전 ILO 총회에서도 노동권의 보편성과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힘들게 조화해서 거둔 값진 결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은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고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사의 신뢰도 아직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큰일일수록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을 위해 배려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수용할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 일자리를 위해 서로가 한마음으로 이어지고 맺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재직자, 구직자, 기업을 모두 아우르는 국민의 눈으로 고용노동정책을 꼼꼼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정책 수요자가 마음으로 공감하도록 현장을 중시하겠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려서 국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관점에서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에도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술인복지법 제정으로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사용종속 관계의 근로자로 의제해서 고용보험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추진이 문방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골격과 근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인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적절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권 차관입니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정철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입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권혁태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신기창 정책기획관입니다.

심경우 국제협력관입니다.

안경덕 대변인입니다.

최수홍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관련 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유재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업무상 해외 출장 중입니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류시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전운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정철균 기조실장입니다.

주요업무 및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용 동향 및 중점 대책, 노사관계 동향 및 대책, 최근 주요 현안, 그리고 6월 국회 입법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동향 및 중점 대책입니다.

그간 금융위기 등으로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민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금년 5월 현재 35만 5000명이 증가하여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등 민간 서비스업에서 취업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또는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업애로 계층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며 청년층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분야 중점 대책입니다.

먼저 일자리 현장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부와 지방관서에 일자리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6월 15일 현재 9000여 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채용 정보를 파악하고 8000여 건의 기업 애로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그간 발굴된 주요 애로 사항은 먼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단지역 교통 불편 문제와 외국인력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창출 시에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발굴한 애로 사항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계 주도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 잘하는 청년 일꾼을 양성하겠습니다. 배움터에서 일터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취업아카데미 등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터를 배움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며, 지방대생의 반듯한 일자리 취업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수사업을 내실화하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와 연계하여 해외 우량 구인처를 개척·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고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 수요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등 Best Practice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인원 외에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칭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전업주부 등에 대한 재취업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재직 단계에서 더 오래 일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연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 지급을 더 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의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애로 계층을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을 확대하고 퇴직전문인력은 중소기업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7일에 마련된 '베이비붐 세대 고용 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후속 조치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 속에서 사회적기업과 종사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진입·성장·자립 단계별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자치단체로 사업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이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에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 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공공시장을 확대하며 창업·경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과 지역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관계 동향 및 대책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가 감소되었습니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률은 89%이며 산업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입장 차이와 현장 임·단협 교섭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조법 재개정 요구와 제도 시행 준비를 병행하고 있고 경영계는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현장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 방향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 준수를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복수노조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수노조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국제기준 위배 등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장의 노사관계 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내하청이나 복수노조 등 주요 예상 분규 요인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생산적 교섭이 확산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한진중공업입니다.

지난해 말 노조에서 인력조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사이에 임·단협과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등 외부 단체 500여 명이 김진숙 격려 및 파업 지원 희망버스 행사를 시도한 바 있고, 또 지난 6월 16일에는 고용부장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 테두리 내 노사 자율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고자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지도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 등 재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기업입니다.

지난해 1월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에 대해 합의한 이후 교대제 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파업과 직장 폐쇄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도 현재 노조는 파업 조합원의 일괄 업무 복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현재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당분간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노사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무급휴직자는 457명이며, 이들 무급휴직자의 순환근무 합의에 대한 합의 이행의 문제가 아직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 쌍용차 고용대책 T/F를 구성하고 평택시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등 고용·생계안정대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평택지청에 쌍용자동차 재취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가족 등에 대해서도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입니다.

먼저 사내하청 문제는 지난 2월 고법 판결 이후 2차 대립양상을 보이다가 현재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태이며, 정규직 전환과 징계를 둘러싼 일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6월 말부터 7월 사이에 집중 교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간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관련한 특별 협의는 진전 없이 종료되었고, 사 측에서는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업무 복귀를 거부한 전임자 전원을 무급휴직 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임단협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설정 등으로 교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대책입니다.

먼저 차별 개선 지원을 위하여 상담, 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7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안)에 대한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익위원(안)의 주요 내용은 하청 사업주는 근로 조건 및 해고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원청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 단가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원·하청 사업주의 공동 책무로서 하청 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원청은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전자, IT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별 시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 등으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 제도 개선 T/F입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등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뇌심혈관 등 3대 질환별 소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산재 판정 절차의 경우에는 15개 개선 과제 중 10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5개 쟁점 과제에 대해서 현재 집중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에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관련입니다.

그간 예술인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4건의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그간 수차에 걸쳐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왔으며, 문방위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을 현행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입법적으로 근로자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예술인의 활동 특성상 실업 여부 및 구직활동 확인 곤란 등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타 법률에서 적용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의 고용·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별도의 맞춤식 제도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번 6월 국회의 입법 계획입니다.

금년 6월 20일 현재 환노위 계류 법안은 총 249건이고, 그중 53건이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현안,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부 법안입니다.

지난 09년 12월에 제출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은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제출한 고용보험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 개정을 전제로 금년 예산에 39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10월에 제출한 보험료징수법은 노조전임자가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5월에 제출한 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업주, 화주 등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기구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도록 하여 하역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11월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이 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 시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음성적 모집 업무를 양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12월에 제출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제회의 기능을 고용 안정, 취업 지원, 복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 4월에 제출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 4월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전부 도급을 준 경우에도 원도급 업체에서 산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순 의사진행입니까?

○이미경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경 위원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저도 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노조법 개정이 왜 안 됐는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양대 노총에서 아마 위원장님에게도 항의 방문을 하고 오늘 또 우리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찾아와서 요청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131명 의원이 노조법 재개정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가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논의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부장관께서 반대해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노동부장관께서 반대하셨는지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룬 결과의 산물이고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실한 시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타임오프는 시행이 됐지만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산업현장에 노사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81명의 의원님이 서명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여야의 재개정안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당 의원님 안은 복수노조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고, 야당 의원님 안은 복수노조와 함께 가야 되는 창구 단일화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는 포퓰리즘적 차원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론도 굉장히 노동후진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의 비판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간의 노사정 합의, 국제기준,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 이런 시점에서는 상정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노위에서 다루어야 될 많은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것 관련입니까?

○홍영표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상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질의 시간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순 글쎄요.

○홍영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상정 관련해서……

○위원장 김성순 이 법안 상정 관계는 나중에 오후에 있는데,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홍영표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매번 이렇게 진행을……

○위원장 김성순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히 하고 지나갑시다.

○홍영표 위원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다 아시겠지만 야당 의원, 야 4당 의원 81명 그리고 한나라당의 의원 50명, 131명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안과 야당 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30명이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서명해서 이 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는데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노동부장관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상정을 안 했다면 저는 도대체 이 국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가 또 한나라당의 이범관 간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상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회의 중이라도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적어도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오늘 원래 조남호 회장 출석하에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조 회장이 불출석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국회에서도 들어 보고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아까 김형오 전 의장께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주 편만 든다. 노사 자율로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주 보호 쪽에만 너무 치중하고 노동자 해고를 방치한다' 하는 얘기를, 집권 여당 쪽에서 한 말씀이에요. 아프게 들으시고.

현안 보고 9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진중공업 하셨는데, 죽 날짜별로 정리했는데 6월 10일 날 용역 동원해서 충돌, 폭력 행사가 되고 그 대목은 왜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노동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왜 빠졌어요? 장관,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큰 주요한 근간이 되는 사항 위주로 기술을 한……

○정동영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회사가 용역을 칠팔백 명 동원해서 대충돌이 빚어졌는데, 보고는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경비업법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용역들이 위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지요?

잠깐만 그 프로젝션(projection)을 한번 틀어 볼까요, 6월 10일 날?

(동영상 상영)

도대체 저게 뭡니까? 저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안타까운 현실로 봅니다.

○정동영 위원 위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보면 징역 3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백한 위력과 물리력을 사용해서 노조원들을, 폭력을 사용한 명백한 사례인데 보고에도 빠져 있어요, 보고에도.

사 측을 고발할 용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호작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이 되는 행위, 수반되는 행위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쪽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를 하면 적절치 않다, 응분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형오 전 의장님께서 노동행정기관이 사주 편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정동영 위원 사주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그리고 용역들이 이렇게 위력과 물리력을 사용한 것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은 해당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노동부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안타까운 현실로 보고, 사법당국에서 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가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노조에 대해서는 불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문서에도, 보고서에도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사, 노사……

○정동영 위원 사용주가 저런 식으로 경비용역들을 20대 청년…… 용역들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니까 저런 일자리라도 모집하면 달려가는데 20살, 19살짜리 청년들 모아 가지고 50대, 60대 노동자 조합원들 발로 차고 욕하고 패고, 반인륜 범죄예요. 그리고 명백하게 경비업법 위반입니다. 이거 노동부에서 조사하세요.

지금 보고서에 넣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실상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직장의 점거 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동영 위원 직장을 점거하면 용역을 넣어서 끌어내도 적법합니까, 그 말씀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직장의 불법적인 점거 자체도 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됐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용역을 넣어서 끌어내도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용역은 용법대로 또 법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저런 행동이 적법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어느 쪽이 적법이다라는 게 아니고……

○정동영 위원 용역의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력과 물리력을 사용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직장의 시설, 노조의 직장 점거 행위도 법 위반이 됩니다.

○정동영 위원 장관이 바로 그 같은 태도를 취하니까 여당 의원도 '사주 편이다' 이렇게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유성기업에서 또 용역하고 조합원들의 충돌이 있었는데 보고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오늘 상황까지는 여기 오느라고 아직……

○정동영 위원 아침 7시에 또 용역하고 조합원들의 충돌이 일어나서 조합원 18명, 용역 6명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사가 자율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풀려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법행위가 노사 어느 쪽이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일인데 노동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유성기업에 홍영표 위원이랑 가서 노도 보고 사도 보고 했는데 노 측은 '일괄 복귀하겠다', 그런데 사 측은 '일괄 복귀해서 또 공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믿냐?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 이 정부하에서는 사주도 늘 진정성을 얘기해요, 대통령도 진정성 얘기하고 그러는데. 진정성, 노 측은 일괄 복귀하겠다는데 사 측은 못 믿고 또 노조 측은 사 측이 노조 와해하려고 그런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고…… 바로 노동부지청도 그래서 두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서로 못 믿을 때 중간에 그 보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재도 하고…… 그 신뢰만 생기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방치하니까 며칠 되다가 또 용역하고 조합원들이 충돌하고…… 유감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신임 장관으로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본적으로 서로가, 룰 범위 안에서 노사 당사자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도 회사의 자재·가스 반입 과정에서 충돌이 생겨 가지고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도록 지도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신뢰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직장 폐쇄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조의 파업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 폐쇄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지청에서 나서서 노도 만나고 사도 만나고 해서 중재를 좀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필요한 교섭 주선을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규 위원님 지금 하실 수 없습니까?

○손범규 위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식사하고 하지요.

○위원장 김성순 아, 그래요?

그럽시다.

○이미경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님, 저 먼저 질문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성순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손범규 위원 밥은 먹어야지요.

○위원장 김성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진중공업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남호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6월 16일 날 사업장 방문하셔서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율로 해결을 하도록 촉구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고자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르고 회생 시에는 우선 재고용을 지도한다, 고용센터 통해서 취업 알선하고 직업훈련, 재취업에 적극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문제로 현장도 방문하고 당사자들, 회사 측은 못 만났지만, 안 만나 주니까, 만나면서 느꼈던 그러한 판단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관님, 아시는 대로 지금 한진중공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투자를 해 놓으면서 지금 현재는 물량이 없다, 수주를 못 받았다 이러면서 지금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투자 하면서 구조조정 하겠다 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2528명이었는데 1410명으로 현재 됐습니다. 거의 1000명 이상을 구조조정 했고 지금 또 구조조정을 더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스스로가 친일자리 장관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들은 지금 흑자를 봐서 배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200억 원의 배당을 나눠 가졌는데 이런 식의 정리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측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진중공업의 노사갈등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점에 출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경영상 사정에 대한 판단을 제가 직접 소상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경영상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라고 치면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신뢰를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동시에 그렇게 됐을 때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회사 측은 회사가 회생하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한 것이 쌍방 간에 서로 신뢰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 가기를 당부했고, 그런 의미에

서 직접 현장에 나서 노사 모두를 질책을 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관님처럼 생각하면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참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동부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 노동부의 판단에서 보시면 상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받아 가는데 불가피한 정리해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노동부 차원에서도 일정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물어본다든지 또는 정 안 되면 정부 안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에 맡긴다 하고 맡겨 놔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다 하는 것이 떨어질 때까지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 과정에서 또 티격태격 물리적으로라도 싸우면 불법이다 하고 잡아가는 식,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처럼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2007년하고 2010년에 걸쳐서 그동안 그것도 한참 싸워 갖고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합의를, 단체협약을 해서 합의를 해 놓고는 왜 안 지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사협약을 이행하도록 강제를 더 세게 해 나가고 하는 것이지 '왜 단체협약 했는데 안 하고 있냐', 그다음에는 그 과정에서 또 물리적인 충돌만 있으면 잡혀 가고 어쩌고 하더라도 '노사 양쪽이 다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노동부가 제대로 일한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이 결국에는 법원의 법적 판단을 구해 놓았고 또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미경 위원 단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단체협약을 두 차례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대부분 판례상으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인 거지요.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정변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그냥 노동부는 일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법정에서 다퉈라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권리분쟁으로서 법적인 쟁송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미경 위원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쌍방 간에 법적인 쟁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법적인 쟁송만 들어갔다 하면 노동부는 '그것은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노동부가 너무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법원에만 맡겨 놓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부가 촉구해야 될 일은, 우선 정리해고가 지금 대단히 이유가 맞지 않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조사했을 때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는 법원에만 맡기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는…… 그래요. 100% 양보해서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을 충실하게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또 지도해야 되는 거지요? 해고회피 노력을 한진중공업 사 측에서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글쎄, 위원님, 우선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다라는 인정을 했고……

○이미경 위원 아니, 해고회피 노력을 했느냐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인정 속에는 해고회피 노력을 포함해서 판단한 사항인 것이고, 해서 법원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그 점을, 사법당국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경 위원 그것은 대단히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1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고회피 노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느 날 노조는 인정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너무 경영

상의 어려움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그게 노력이 안 되는 거지요. 대화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해야 되도록 노동부가 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그 노력들을 하도록 노동부가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했습니까? 한진중공업이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해고회피와 관련해서 자산의 매각이라든지 복지후생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인력 부문에서는 분사 204명, 전환배치 163명, 그다음에 희망퇴직 636명, 복지 부문에서 성과급 반납, 그다음에 복리후생 축소, 토지·건물 등 3439억 원의 자산매각 이런 활동들도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경 위원 그러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고용유지신청금 이런 것 하면서 하도록 하는 노력은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신청을 한 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하라는 것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자르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자르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걸 하도록 자꾸 권유해야지 되는 것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우리와 함께……

……

ILO 총회에 가서 독일에서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굉장한 불경기 속에서도 독일이 실업률이 점차 낮아진 것은 이러한 가능한 한 해고자를 내지 않고 그 고용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고자들이 안 나오고 고용이 유지되면서 점차적으로 내수도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고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경제위기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어요. 이것이 서로 상생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임금도 높고 하니까 노동자들과 시민들 덕분에 상당히 수입 올렸는데도 필리핀으로 가 버려야 되겠다 하고 몽땅 짐 싸서 떠나 버리는 이런 방식 가지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도 어떤 경우에는 깎아 주고 이러면서 도움을 주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노동부가 정말 해고회피 노력을 해서 그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철저하게 기울여 주셔야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우리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장관님께서도 나서서 지혜를 모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같은 방식으로는 아마 조남호 회장은 '정부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좇아서 필리핀으로 가 버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그 근거로 이게 노사정 간에 합의를 해서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법은 개정될 당시에 국회에서 사실 날치기로 처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당시에 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인식이 지금 장관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노동계의 적어도 반쪽의 노조가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여기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시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12월 4일 날 노사정이 합의를 했고 민주노총은 논의에 들어와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당사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아무튼 그 마지막에 민주노총에서 이걸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정부에서 강요하니까 그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노총도 그렇습니다.

한국노총도 당시에 위원장이 합의를 했지만 위원장 합의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노총위원장이 사실상 나중에 물러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임기가 지난 거지요.

○홍영표 위원 임기도 문제지만 출마도 못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저는 아주 정부에서 공작적으로 노동계에 대해서 협박하고 압력을 집어넣고 이러면서 당시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다수의 산별 위원장이라든지 대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것을 위원장을 빼내 가지고 합의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공작적으로 노동계에 대해서 협박하고 압력을 넣어서 합의한 것을 가지고 "노사정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좋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한국노총의 노조위원장이 노사정에 참여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동계가 지금 전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임오프 문제. 타임오프 문제는 또 이렇습니다.

적어도 이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당시에 입법을 할 때 논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단체의 임원들은 인정을 하겠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가 있는 당시의 임태희 장관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노동부에서도 당시에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지금까지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그 법을 입법할 때 그렇게 해 놓고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듯이 상급단체까지도 타임오프 대상에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 사실상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법이기 때문에 지금 타임오프를 폐지해야 되고 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당시에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도 우리가 복수노조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한된 노동삼권 특히 이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만날 떠드는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걸 ILO 기준에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복수노조를 도입하는데 사실상 창구단일화를 하면서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박탈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도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권 여당에서 날치기로 새벽에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좋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우리 국가의 어떤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야 4당의 81명의 의원, 한나라당의 50명 의원이 어찌됐든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 긴급히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법안을 냈는데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작적 협박, 이런 말씀 부분은 노동계 당사자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으로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홍영표 위원 그것은요, 장관께서 답변할 게 아니라 그분이 문제제기하라고 그러세요.

뭐 대변인이세요? 장석춘 위원장의 대변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말하자면 노동계의 책임 당국으로서……

○홍영표 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당시에 정부에서 공작적으로 새벽에 위원장 빼내 가 가지고 협박하고 성명서 합의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홍영표 위원 아니, 그건 장관이 몰라서 그러

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홍영표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 그래서 장석춘 위원장의 문제까지 변명해 줄 건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 팩트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홍영표 위원 아니, 팩트가 내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사정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제 민주노총이 말하자면 논의의 틀에서 나갔다라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2006년도에 3년을 유예할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빠졌습니다만 노사정 합의라고 지금까지 다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논의 과정에서 상급단체 파견자 인정을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엄연히 처음부터 상급단체 파견자의 인정 부분은……

○홍영표 위원 그것은요, 우리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당사자로서 겪은 사항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여기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고요. 예컨대……

○홍영표 위원 그러면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내의 노조간부가 아니면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하기로 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정부에서 반대하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5년, 5년, 3년씩 유예를 해 가면서 아주 어렵게 개정된 법의 시행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국제적인 흐름 차원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안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면서 주무부처 당국자로서는 이 부분들이 흔들리면 노동권의 후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동시에 복수노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이지 기존 노조나 노조간부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득권 차원의 접근으로 복수노조 문제를 바라볼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영표 위원 좋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장관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데, 지금 이 타임오프가 이게 무슨 뭐 타임오프를 시행해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노사관계가 안정이 됐다는…… 참 황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임오프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특히 이게 심각한 것이 개별 사업장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이 타임오프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상급단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상급단체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국제적 흐름입니까?

그래서……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장관하고 이렇게 논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판단해서 다시 입법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입법권에 대해서 장관께서 하라, 마라 하지 마세요. 국회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장관이 말하는 국제적 흐름, 노사관계 안정,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우리 18대 국회에서 못하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할 겁니다.

개정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사관계의 자주성이 말하자면……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동자 운영경비는 노조가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홍영표 위원 저는요, 전경련의 대변인 같아요,

노동부장관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응분의 직을 제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경련 대변인 같으시다고요.

○위원장 김성순 자, 또 다른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요.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예, 이정선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환경노동위로 왔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파행하고 양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한 사항이 무차별적으로 깨지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위원들이 상임위에 와서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조율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행정부에 있는 수장들이나 지금 행정부에 있는 분들은 매번 나와서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가면서 부처가 일을 못한다, 효율적으로 일 잘해라, 뭐 시간을 아껴 써라……

우리 국회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제재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권한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효율적인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노동위의 올해 위원회가 한 일이 노동부 쪽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2월, 4월, 물론 한진중공업 중요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그 한진중공업 때문에 있습니까?

민생법안 하나도 상정 못하고 모든 것을, 민생법안은 다 뒤로 미뤄 놓고 오로지 한진중공업……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 다 파행시키고 지금 6월입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민생법안들과 더 많은 민생들을 위한 정책, 제도, 정부에 대해서 질타할 것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진중공업에 매여서 지금 반년을 지내 왔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정선 위원 2월, 4월 다 파행되고 지금 6월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오전에 거의 다 시간을, 위원들끼리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논란을 벌이다가 이제서야 이제 질의를 하는데 한진중공업이 2월에서 4월 파행 계속 거듭하면서 6월까지 왔습니다.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변화가 뭐 있습니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계속 합의를 하지 못하고 정부 쪽에 뭔가를 자꾸 신호를 주는데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름대로 한진중공업도 진통 속에 진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 본 노사는 나름대로 문제를 풀기 위한 자세가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외부 인사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춤주춤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노사에게 맡겨 주면서, 어느 정도 인내하면서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의 이런 파행들이 다른 민생법안이라든가 정책, 제도에 저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지금 이런 것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로지 한진중공업에 지금 치우쳐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정부나……

법안 하나도 지금 상정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과는커녕 상정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많은 어려운 계층의 노동자들이 무슨 얘기를 국회에 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환경노동위 소속의 그냥 여당 위원으로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정말 소외된 계층, 정말 어

려운 노동자들, 지금 실업률이 청년실업률도 그렇고 우리가 그 많은 계층들의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대화하고 건의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반년을 한진중공업에 매달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 국회의 한심스러움을, 저 역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민생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2월 달부터 준비했던 질의서를 계속 지금 바꾸면서, 이것 사실은 바로바로 해서 장관님이 담당 직원한테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시고 이게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 이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도 역시 참 한심스럽고……

자, 계좌제 실시기간 취업률이 2009년에 28.9%였습니다. 2010년에 29% 됐습니다. 2011년 3월까지 15.2%에 반해서 실시하지 않은 기간 취업률은 오히려 2009년에 46.2%, 2010년 43.6%, 2011년에 2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계좌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다른 훈련의 성과하고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적으로 충분치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우선 과정 자체가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기간의 다과도 계좌제인 경우 아닌 경우가 차이점도 있고 또 그 과정에 들어오는 훈련생의 속성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계좌제를 통해서 다양한 훈련과정들이 개설이 되고 또 훈련생들이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과정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계좌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문제는 이 계좌제 기관 선정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고 계십니까, 선정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예컨대 시설, 장비, 교사,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구체적 질적인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치팅(cheating)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의 심사라면……

○이정선 위원 아니, 사전에 공개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정선 위원 일단은 신청했던 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은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 탈락한 기관들이 수긍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뭐 알겠습니다.

나누어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예측 가능한 그런 측면들의 기준들은 최대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성상이라면 그 부분들은 그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다음은 장애인공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보조공학기기가 모든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라고 공단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 나가 보고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그 장애인 직업훈련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보조공학기기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자,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총 5145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지급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공공훈련기관 49개, 또 고용부가 지정한 훈련기관 873개, 그렇게 해서 총 92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기관이나 과정, 수강생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공단에서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학원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단 내규에는 보조공학기기 지급 기관 대상 922개에 대해서 현황이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단 관계자는 '그런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이것은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적응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질의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적 운영은 조금 거추장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또 서로가 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장관님, 좀 앞서서 오늘 오전에 양대 노총 위원장 또 그 관계자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님 면담을 통해서, 또 여야 간사님들 면담 요구를 통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 50여 명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또 그보다 먼저 발의된 재개정, 81명의 우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장관께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좌지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국회 앞에, 바깥에 조금만 나가면 집회하는 소리 장관님 들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노총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노사정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것 시행을 앞두고 양대 노총 공히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 변한 겁니다.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을 장관께서 앞장서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30분경에 얼마 전에 벌어졌던 유성기업에서 또 노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이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업무복귀선언 기자회견도 했고 또 근로하겠다는 희망서도 작성해서 회사에 전달하고, 그런데 회사 정문 앞 컨테이너는 맨 그대로, 통로와 컨테이너에 용역 하는 그 직원들이 방패를 들고 막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지 도무지……

또 사 측은 조합원들의 복귀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서 일괄 복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장관이 보시기에 조합원이 어떻게 하면 사 측이 진정한 업무복귀의 의사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거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우선 유성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노조법 재개정에 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ILO로부터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가 있고 이제 겨우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과 OECD로부터 11년간 모니터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또 돌아간다면 예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후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성기업의 노사 충돌과 관련해서는……

○홍희덕 위원 장관님, 방금 그 답변과 관련해서 ILO에서 모니터링 받고 했던 부분은 단결권을 계속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 유

예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그래서 지금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재개정에서도 복수노조의 진정한 의미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그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창구단일화를 자율로 해 달라는 그 요구지 복수노조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창구단일화 없는 복수노조는 없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본적으로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창구단일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성기업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직장폐쇄 이후 노조에서 복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아직까지 덜 끝난 상황으로 보여지고 아마 노사 간의 신뢰가 좀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유성기업은 아직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어요.

장관님, 회사의 직장폐쇄의 목적은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말씀대로 공격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 수단이다 보니 노조법상에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진행된 직장폐쇄가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쟁의행위가 끝나면 직장폐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단행하는 게 직장폐쇄라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밝히면 즉시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지금 유성기업이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통상적으로 복귀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사가 이견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성기업의 경우에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재점거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니까 아마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홍희덕 위원 장관님, 노조가 재점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로희망서까지 줬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홍희덕 위원 그 회사 측 얘기를 그렇게 받아서 하시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제가 법원의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판례도……

○홍희덕 위원 법원 판례만 계속 뒤적이면 언제 해결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 해서 결국에는 복귀의 진정성, 쟁의행위의 행태, 경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 그러면 사 측에서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들어와서……

○홍희덕 위원 잠깐요, 단순히 그냥 다시 들어와서 복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생산시설을 점거한다, 그게 우려된다는 겁니까? 그게 사 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 측 얘기는 절대 그런 게 없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측의 그런 정말 언어도단,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노동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설득하고 풀어야 할 장관께서 사 측의 그런 일방적인 논리에 어떻게 춤추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노사 어느 일방에 기대고 싶다라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하루빨리 서로가 신뢰를 어느 정도, 진정성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자 그러면요, 그만하십시다. 시간 문제로……

정말로 누가 불법을 저지르는지 좀 살펴보시기를, 정말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촉구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가 '우리 일터를 자랑합니다'

공모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고용노동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고 있는 작업장은 좋은 일터가 아닙니다. 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도 맞지요?

유성기업 노사도 그렇게 생각해서 주간연속 2교대제, 이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회사가 합의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노사 입장 차이로 당분간 갈등상황 지속이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그냥 노사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는 그런 말씀만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좀 조정하시고 진짜 어느 쪽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유성기업의 사태 오늘도 18명이 병원에 실려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동자 측에서 18명, 또 용역직원 6명, 이렇게 한쪽 편에서 이런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용역직원이 애초에 차도로 진입해서 13명을 부상시킨 사건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진중공업에 어쨌든 우리 장관께서 내려가셔서 노사를 만나시고 또 하여튼 자율적으로 좀 적극, 즉각적으로 교섭에 나서 달라고 애쓰신 것처럼 유성기업에도……

우리 장관님, 좀 작은 회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있어요. 여기에 좀 노사와…… 내려 가셔서, 아니면 정말로 차관님을 보내시든지 가셔서 좀 책임 있게 노사와 이야기하실 그런 용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제대로 풀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경우에는 자생력이 없어진다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스스로 풀도록 적극적인 주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다만 장관을 대신해서 지방청장, 지방지청장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살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한진중공업 경우에도 부산지역에 일자리 관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패키지로 제가 둘러본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무튼 좀 기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님께 처음 질의를 하는 것이라서 좀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옛날에 이상수 장관이 계실 때,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 못 하고 임태희 장관 때 고용노동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경제의 함수인데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는데 우리 장관님은 고용이 경제의 함수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고용 창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제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답변을 드릴 정도 수준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노동부에서도 고용노동부로 간 첫 번째 이유가 노동부라고 했을 때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위주로 쳐다보는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의 관점도 대단히 소중하고, 특히나 시대적 화두인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 없는 사람, 더 나은 일자리 가려고 하는 사람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었고, 동시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또 어려운 경우에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점도 대단히 중시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해서 우선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가는 것이 한 차원 더 넓게, 깊게 보자라는 그런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경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한쪽 부분의 부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국무위원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

에서 같이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정부의 각종 여러 부처의 정책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재정·금융·산업 등등 이런 수단들을 가동해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풀어 가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도 만들고 고용전략도 수립을 하고 또 고용정책조정회의도 만들어서 각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우르면서 역할을 더 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장관님이 하셔야 할 업무영역을 설명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관께서 친일자리 장관이라고 하셨다고, 저는 그때 인사청문회 때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첫 번째 분야는 뭐냐 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관심사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열악한 처지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밖에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노사 문제 등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요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문제고, 그렇지요? 우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관심사이셔야 되고 또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진섭 위원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더 많다 하는 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학의 불일치 문제가 지금 우리 실업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해외 자원개발 문제에 관한 보고 자리에 가 보니까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 외국에서 은퇴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학교가 배출하는 인력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그런 미스매치를 좀 찾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과부장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해외 건설현장에 가 보니까 뭐 직원이 천몇백 명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감리·설계 이런 것도 다 인도 사람들이 와서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예 없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대요, 현장에 물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노사관계 이 싸움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눈을 떠서 어디에 일자리가 있고 어디가 블루오션이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인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큰 디자인을 좀 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진섭 위원 또 전의 장관님들도 보면 늘 중소기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걸 풀어 주는, 이 미스매치를 잡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요새 대학생들이 다 대기업에만 가기를 희망하고 중소기업에 안 간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고 왜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의 청년 인턴 참여자에 취업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진섭 위원 누구에게 줍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차근하게 답변 좀……

○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누구에게 줘요?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에게 줍니까, 기업에 줍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까지의 고용안정사업은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으로 가게끔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즉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진섭 위원 그렇게 가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진섭 위원 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왜 기업에다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과거의 노동정책을 보면 뭐 여성도 도와줘야 되고 고령자도 도와줘야 되고 장애인도 도와줘야 되고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되는데 돈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각종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어 갖고 여기 찢어발기고 저기 찢어발기고 다 나눠 줬어요. 그래 갖고 '이런 일도 한다' 하는 생색내기적 정책이었지요. 별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우리 장관님의 노력을, 역량을 경주하시고 좀 집중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답습적인 노동정책들을 한번 탁 털어 버려야 된다, 그 점에도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동의합니다.

○정진섭 위원 제가 좀 일자리를 만들고, 사실 뭐 노동부가 새로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 있는 일자리를 잘 찾아서 해 주는 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열악한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이 결합한 이 현실입니다. 어떤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회사인지 관계회사인지 하여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는 다 비정규직만 고용해서 쓰고 최저임금만 주고 운영합니다. 자기 회사로 데리고 와서 일을 하면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니까 이윤이 적게 나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말하는 아웃소싱, 뭐 그거는 굉장히 그럴듯한 제도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산업구조이고 우리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진섭 위원 지금 젊은 애들 이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에 걸려서 88만 원 받고 어떻게 장가라도 가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정진섭 위원 우리가 기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들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길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아웃소싱 하고 최저임금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들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구조의 3분의 1의 노동자를 저 절벽 끝으로 내모는 이런 산업구조, 이런 노동정책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담한, 아주 담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이건 한나라당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큰 전환을 해야 된다, 과거에 경제 때문에 한번 돌아갔다고 하면 다시 리턴(return)해 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이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정면으로 끌어안고 가겠다는 자세를 갖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보시고 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장을 가진 분들의, 노사 간의 분규 이런 것들에 노동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앞의 두 개를 절대로 잊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장관께 우선 당부의 말씀으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신 말씀 가운데 인력수급 미스매치, 교과부와의 적극적인 정책 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학에서 말하자면 높은 진학률에 상응하는,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상당 부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대학의 교육내용이 바뀌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금년에 새로 만든 것이 청년취업아카데미라고 해서 말하자면 대학교육과정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인력수급의 문제도, 종전에는 부처 간의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고용노동부로 인력수급계획이 총괄적으로 취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대학 정원도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조정되게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는 대학에서 등록금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고 기업체와 연계

해서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잘 약정을 해서 도움도 받고 필요하면 장학금 혜택을 통해서 산업현장에 부합되면서 학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길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부를 그런 측면에서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비정규 문제, 최저임금하고 결합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노동시장은 탄력성이 있고 유연한 가운데 개별 근로자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의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더 많이 짜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틈새 일자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겨서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진섭 위원님, 비정규직 문제 잘 거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노동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뭐 관심을 물론 가지겠지만 좀 효율적인 방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우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그 최저임금 미달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사실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또 해마다 올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임금 근로자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본적으로 좀 열악한 근로현장이 많다라는 측면이 되고 동시에 한계기업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수준의 관계에서도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지불능력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정부는 그것을 존중해서 고시하고 지키게끔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10% 정도 되었고 일반 근로자 임금 인상률은 5, 6%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게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한계기업들도 양산되면서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임금 올려도, 최저임금 올려도 영세사업장에서 그걸 제대로 못 지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마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률을 정하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인상이 좀 높을 경우에는 어려움에 봉착되리라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현실화로 인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생산성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정을 두루 살펴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 최저임금을 포함해 가지고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전가되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임금을 올리는데 올린 것이 또 그대로 물가에 반영이 되어 버리면, 시간·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간에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실제 소득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 볼 때에는 임금이 올라도 물가로 전가되는 비율이, 그것보다는 적어야 임금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는데 지금 우리 구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최저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산업별이나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개별적

으로 협상해 가지고 정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는 전국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업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논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좁은 사정이고 또 나름대로 평등 지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해 봅니다.

○조해진 위원 제도로서는 그게 더 앞선 제도라고 보십니까? 더 선진적인 제도라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연방제를 한다든지 영토가 넓다라든지 또 아주 다양한 업종,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아니요, 그 제도 자체로 볼 때는 절대적 기준으로 봐서 이게 더 선진적이고 덜 선진적이다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아니다 그 기준은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 어느 쪽으로 보시는 건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자체를 가지고 어디가 더 앞서다라든지 우위다라든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제 곧 복수노조가 되는데 걱정되는 게 사업장마다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헤게모니 잡기 위해서? 그러면 또 현장이 더 격화되고 갈등이 더 커지고 할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자, 조합원들의 판단 역량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장을 선명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결론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더욱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저희가 들어 보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수노조제도 자체가 바로 오히려 선명성 경쟁을 촉발시킨다라고 하기보다 다양한 노조가 있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오히려 더욱 더 조합원을 위해서 서비스 경쟁으로 가더라라는 경험적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전망대로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강성 노조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유연한 합리적인 노조는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현장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 노조가 노동을 끌고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가 복수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단적인 어느 노조의 결정보다는 합리적인 결정 쪽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좀 전에 대졸 취업 문제 또 진학 문제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대졸자 취업률이 낮은 것은 대졸자가 워낙 많아 가지고 대졸, 진학률…… 졸업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기본적으로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하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의 갭이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대학진학률이 80%가량 되는 이 현실 때문에 그걸 우리 고용시장이나 정부가 제대로 못 받쳐 주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등록금 무상 이야기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학 세울 사람 더 많아질 거고 대학 운영을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져 주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거의 진학률이 90%, 100% 가까이 될 수 있는데 이 졸업자들을 국가가 고용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시킨다는 게—물론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값 등록금이 옳으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반값 등록금 또는 등록금 무상이 현실화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 졸업장을 갖게 된다면 정부는 더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고용 부담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좀 지나친 고학력화가 노동시장에서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분명하고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과 달리 학교를 마치고 취업하는 유형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을 하고 나중에 적당한 때 공부를 해 나가는 유형의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선 취업 후 진학, 이런 쪽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정부가 국가가 대학 설립을 사실상 자유화해 주어 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누구나 갈 수 있게 진학을 보장해 주는 셈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국가가 제도로 보장해 준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값 등록금 또는 등록금 무상이 되면 이제 대학 다니는 걸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열심히 안 해도, 자기가 돈 안 벌어도.

대학 다니는 것까지 지금까지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장학금 받으면 그것은 시혜라고 생각했고, 고맙게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권리로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책임져 주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나중에 취업도 졸업시켜 놓았으면 다 국가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그게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다라고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걱정 안 되십니까,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그래서 인력 수급 전망과 관련된 기능을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 조정도 필요하고 또 이공계 부분, 이런 식으로 미세한 학과의 개편 방향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대학의 구조조정도 상당히 가속화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이 청년실업 대책을 풀어나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해진 위원 다른 지역까지 말씀하신 것, 대체로 다 옳으시고 저도 동의하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 제도 또 대학을 등록금까지 걱정 없이 정부가 다 알아서 시켜 주는 제도, 그러고 나고 또 졸업하면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머리 싸매고 해 가지고 취업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이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는 국가가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체제를 가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감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九 委員 지금 전 세계가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미국의 오바마도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래서 요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까 하고 제도를 하나 금년도부터 채택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 일자리공시제도,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작년부터……

○金容九 委員 작년부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시작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6월 현재 244개의 지자체 중 225개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퍼센트로 따지니까 한 92% 정도 되는데 참여의사만 밝혀 놓고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했더라도 사업실행계획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에 굉장히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시겠으며 또 이 제도 정착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작년에 일자리공시제를 착안하기를, 황우여 의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 질의 때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자치단체장이 기울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집중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게 하는 방

안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여건을 분석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목표 일자리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과 노사가 합심협력한다고 그러면 훨씬 짜임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통계적인 뒷받침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해서 내실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 단계인데, 지금 225개 참여 자치단체 가운데 208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92%가 목표를 공시했습니다. 공시를 했고, 아직까지 안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는 공시가 되게끔 두루두루 저희들이 측면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자리를 내실 있게 얼마만큼 늘리고 유지했느냐로 평가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 가지고는 아마 재선되기 힘들 자치단체가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툴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온 건 없지요, 하겠다는 것만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제 시작 단계이고 계획을, 목표를 이제 공시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4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쭉 이루어져 가는 상황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평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상황을 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금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금년에는……

○金容九 委員 2억 9000만 원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 3억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패키지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가 말하자면 2차연도가 되고 내년도가 3차연도가 됩니다.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지자체에다가 성과 베이스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성과를 내는 데 상당히 도움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게 안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지자체장이라는 분들이 선거를 해 가지고 당선된 분들이고 아주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준다고 말은 하는데 이래 보니까 예산이 2억 9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지자체 한 군데 다 가지고 가도 자기네 욕심이 안 차는데, 그러니까 이것 뭐 그냥……

그래서 이게 부진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지금 3억 정도는 하나의 행정비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 300억가량 됩니다. 그 부분들을 의지라든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을 내년·내후년도에 더욱더 늘릴 생각이고 동시에 그런 사업비뿐만 아니라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라는 부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 일자리가 늘어나는구나. 여기가 살 만한 지역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容九 委員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어림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좌우간 지자체장들이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주려면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예산.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전에 새마을사업이 성공할 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낸 마을이 인센티브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것이 비단 예산상의 인센티브가 아니고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혜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지역 간에 지역 브랜드 일자리사업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게 하고, 그냥 대충해서는 안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또 일자리와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전체 외국인은 한 130만 정도가 되고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은 한 40만……

제가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아니, 그렇다고 하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고용허가제로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송출국에서 선발을 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송출국에서, 보내는? 인력 송출하는 나라에서 일단은 선발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관련되어서 선발할 적보다 그러한 비리는 없어졌는데, 그러면 역시 송출국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데 간접적인,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규정한 대로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를 못 하고 어디 조금 더 준다 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 이상 못 옮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송출하는 국가의 담당 부총리를 만났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인력을 한국에서 송출 받아 가지고 자기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오히려 자기네 노동력을 고용주들이 착취하지 않느냐, 너무 자기네들을 규제하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비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청년실업부터 약 8%에 가까운 실업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큰 일자리를, 고용허가제로 온 것만 해도 한 40만 명 되는 것을 외국인한테 내주고 우리는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용허가를 맡아서 한국에 온 사람들의 임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높은 임금을 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우리 일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3D 업종 같은 데는 그나마도 외국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가동하기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차라리 이게 어떤 허가제로 하지 말고 자유화시키면 중동과 같이 300불, 400불 주고도 우리가 인력 데리고 와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재와 같이 그런 수준에서 쓰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유화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다양한 것을 하문하셔 가지고 줄여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 빈 일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절충책으로 외국 인력을 쓰고 있는데 대전제가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한, 즉 보충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유화할 경우에는 내국 인력 우선적인 구직을 위한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외국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함께 고려한 장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발할 당시에 산업연수생 시절에는 송출 비리상 평균 송출비용이 3600불인 데 반해서 고용허가제는 960불 정도이고, 불법체류율이 산업연수생제도가 70%일 때 고용허가제가 7~8%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나라와 나라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로 인해서 좋아진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인권 유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속성상 사업주가 원하는 기량, 이런 부분들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쓴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특히 계약이 해지됐다든지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는 나름대로 상당히 잘 운용되고 있다, 해서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이주시스템이다라고 ILO에서 인정을 했고 특히 유엔에서 공공행정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수상해서……

지금 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오늘 국회에 못 나온 이유도 탄자니아에 가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간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꽤나 이 인력 송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러면 자유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ILO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우리는 ILO에 가입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거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노동허가제, 고용허가제가 아니고, 사업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허가제가 아니고 노동허가제 차원이거나 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이거나 그런 속성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金容九 委員 좌우간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 김성순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인사말 말미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문광부 위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가능한 건지 또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본적으로 문방위에서 소위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예술인으로 의제를 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적용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보험의 말하자면 적용이라든지 보험료의 징수라든지 급여를 부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관성 있는 관리 차원에서 대단히 맞지 않다, 특히나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이직을 당해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것인데 근로자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이런 실업 내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예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지만 고용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처우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특히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노사가 보험료를 부담해서 근로자의 경우 실직 시에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맥락이 다른 경우에까지 지급하는 것은 좀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강성천 위원 예술인의 경우가 노동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술인 경우에도 근로자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안을 2009년도에 내놓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문제가 되면 제도적으로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영역에 대해서는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예술인 회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듯이 예술인에게……

○강성천 위원 다른 계정에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고용보험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얘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용보험의 요건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맞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리고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노사회의에 사용자 대표자가 누가 나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직접 가서 사용자 대표로…… 대표이사 이재용 사장이 나갈 때도 있고 또 임원이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온 이재용 사장……

○강성천 위원 그러면 노동자 측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노동조합 쪽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동조합에서는 채길용 지회장……

○강성천 위원 그 대표자가 나오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대표자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

서 사용자 쪽에서는 대표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건 경우에 따라서 위임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서로 노사가 합의하면 꼭 형식적인 대표자로만 맞서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강성천 위원 그것 조남호 회장은 안 나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가급적이면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아니, 조남호 회장 같은 경우는 안 나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께서 조남호 회장 얼굴 본 일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직접 아직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까 김형오 전 의장께서 얘기가 전화를 해도 또 보자고 해도 전혀 한 번 본 일도 없다고 하는데 조남호 회장이 그렇게 높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타임오프가 지금 얼마나 정착이 됐고 그리고 7월 이후에 복수노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한이 만료되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사업장의 89% 정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타결된 타임오프 타결 사업장의 수준은 고시한도를 99%의 사업장에서 지켰고 1%는 고시한도를 벗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복수노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년 연말에 만들어서 각 사업장의 필요한 데다가 알려 드리고, 우리 감독관이 필요한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고, 일선 단위에서는 복수노조 관련해서 이행점검단이라든지 노사가 포함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요 아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사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외국의 경우에 특별히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하고 있고 ILO에서도 창구 단일화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복수노조 자체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것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리고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한진중공업은 아니고 분규 현장에 사실상 옛날에는 고용노동부가 많이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보면 거의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분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 이 지도부가 그렇게 바쁩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전혀 고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아주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노사관계 시절의 정부는 분규 현장에서 어떤 노사간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말하자면 중재하는 식의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가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라라고 할지 모르니까 자생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노사 스스로가 답을 찾게끔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노사간 기조를 확립하고 있고, 지금 저희 근로감독관을 포함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측면 지원, 간접적인 지원, 교섭 주선,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노동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정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

공법으로 기본에 충실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현장에 계속 나간다고 하는데 산재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줄지는 않고, 예산은 느는데…… 산재사고 같은 경우에 줄지 않고 계속 산재사고가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산업재해율이 그동안 수년 동안 0.7%대의 재해율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겨우 0.69%로 마의 0.7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해율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거운 재해, 사망재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중대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사망재해가 늘었지 않습니까? 사망재해가 늘지 않았습니까? 물론 관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장이 많이, 기본적으로 매우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망 사업장이 지금 굉장히…… 사망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래서 사망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요. 사망 만인율 이런 부분들은, 분모·분자를 고려한 이런 부분들은 미미하게나마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닙니다. 개선 안 됐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6.1%의 고도 성장을 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것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은 사실 근로자들의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임금 체불 현황을 보면 1조 1600억에 이르러서 사상 최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임금 체불이 9만 8920개 업체에서 1조 296억 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와서는 10만 6434개 업체에서 1조 163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범관 위원 그리고 또 임금 체불의 내역을 보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업체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1조 1600억 중에.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범관 위원 작년도 임금체불 사업장 10만 6434개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만 4747개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4만 1705개소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에 집계한 건설현장의 노임체불을 보면 27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영세업체에서 겨우 생계 유지형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실업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 더 큰 문제점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노조 임금 체불 중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이 많아요? LH 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등 그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총 체불액의 74%가 이런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체불 해소책에 대한 대책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고 실체적인 내실을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선 체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사정의 악화로 체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저희들은 사업

주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느끼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공정사회의 구축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그런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라든지, 또 각종 금융거래라든지 신용 평가에서도 체불 부분이 반영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건설의 경우에는 임금을 늦게 미뤄서 주는 측면들이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적기에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지금 방안들을 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부문 공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둬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하여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세업자 중에서 경영이 악화돼서 불가항력적인 체불 사업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 문제 해결뿐만…… 해결하면 뭐 합니까? 체불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주나 그런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경영난으로 도산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고, 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된 경우에는 생계비대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가동 중인 기업에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들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경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대부 제도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문제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간제나 파견제 근로자들의 저임금, 차별대우로 이런 비정규직들의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정부의 막중한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라는 것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 차별시정 제도에 대한 활용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이것이 2007년도에 도입될 당시에는 당해 연도에 286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7건밖에 없어요, 금년 현재. 작년에도 194건에 불과하고.

왜 이렇게 차별시정 신청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마도 차별시정을 위한 신청을 할 경우에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현재까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비교적 짧습니다. 짧고, 또 비교 대상이라든지 차별 영역에서 요건 충족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그 제도가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를 정부에서 잘만 운영한다면 지금 노사관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현장의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지도감독 권한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 현장 지도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것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이것이 잘 해결되어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런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차별시정 제도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방식입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오전 회의 때 한진중공업 문제로 오늘 참고인들이 조남호 회장을 제외한 분들이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진중공업의 실태, 지금 노

사 간의 분쟁 실태의 요점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진중공업이 제가 사업장 노사를 만나러 갔을 때 '1937'이라는 숫자가 정문에 있었습니다. 즉, 74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가 합심해서 되살려 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서 당부하기로도 어디까지나 노사가 뜻을 모으면 풀 수 있는 길이 있겠다라는 확신을 저는 했습니다.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풀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노사 모두가 살 수 있는 해법을 찾고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쪽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길지 않은 시간에 답이 나옵니까?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정동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답이 나올 거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근거를 갖고 하시는 얘기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럴 가능성을 봤습니다.

○정동영 위원 개탄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오전에 위원회가 6월 29일 조남호 회장 등을 증인으로 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총이 국회의 역할과 권능을 부정하는 성명서를 내놨어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출석했으면 됐지 지주회사 회장의 출석을 왜 요구하는가' 하면서 '이것은 무분별한 현장 개입이고, 또 사주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또 '이것은 포퓰리즘 행태다',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불공정한 행보'니 '친 노동계 정치인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니 이러면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 권능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의회적이고 또 반노동권적인 이런 시각, 이게 바로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경총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아직 경총의 성명을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

○정동영 위원 청문회 개최가 정치적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름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자, 경영자총연합회 같으면 우리 사회의 상생, 또 사회적 통합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주 비호를 위한 단체만은 아니고, 아까 오전에 김형오 전 의장의 우리 정부의 사주 보호 일변도의 그런 것에 대한 질책을 저는 좀 무겁게 정부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진중공업이 작년 12월 15일에 400명을 정리해고, 또 퇴직시키는 조치를 하고 그다음 날 12월 16일에 174억을 주주 배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올 2월 1일은 현금배당을 54억을 했어요.

그 대부분을 대주주인 조남호 회장이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정리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이 양면을 말이지요. 한쪽으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잘라내면서 한쪽으로는 배당 잔치를 하고 말이지요. 부도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한진중공업의 사 측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일자리를 더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최근에 와서 많이 줄었고 이것은 어찌됐든 과연 이 상황으로 갔을 때 사랑받는 기업이냐,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고, 희망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진중공업이 몇 년 전만 해도 필리핀에 수조원짜리 공장을 지을 정도로 번성했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내 왔고, 그러던 중 말도 안 되는 정리해고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지금 2년 넘게 저항하고 있고, 8년 전 똑같은 85호 크레인에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 2003년도에 올라

갔던 김주익 노조 지회장이 목을 맨 한이 서린 그 크레인에 지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오늘로서 168일째 외롭고 절망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트위터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은 아까 노동부가 보고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 외부 단체가 개입을 해서 희망버스를 탔다 하는 인식과는……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조직된 노조 활동가들의 운동이 아니라 자발성에 의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서 토론되고 추진된 거고, 원인 제공은 바로…… 아니, 400명 잘라내면서 그다음 날 배당 잔치하고 이런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것이 원인.

그래서 지금 죽음의 벼랑에 몰리고 있는 노동자들, 조합원들, 그리고 김진숙 위원에 대해서 가서 좀 격려하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외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0여 명의 용역을 들여서 그 전날 아까 동영상에 본 대로 회사 측이 권위주의 시절, 노동 탄압 시절에 있었던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

사실은 희망버스 예상된 게 한 30~40명 가는 것으로 예상됐어요. 그런데 그 전날 이렇게 용역으로 틀어막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이게 분노가 타올라서 서울, 수원, 순천, 전주, 광주, 부산 등등 정확하게 750명, 1000여 명이 한진중공업에 모인 겁니다.

지금 김진숙 위원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원피스 입고 삼랑진 딸기밭에 가 보는 거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게 뭐, 이념입니까? 땀 냄새 풍겨 가면서 퇴근해서 자식새끼들 끼고 밥 먹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희망버스에 대한 노동부의 시각, 나는 이것 교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진중공업의 노사 갈등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의 노사 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풀어 줄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법 테두리 내에서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동시에 사내에서의 시설 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조기에 이 부분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이채필 장관의, 김진숙 위원의 크레인 농성을 치안 문제라고,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는 한 노동부의 역할은 여기 없습니다. 치안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내몰린 생존권 문제로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문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동부장관은 그런 시각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장관님, 저도 이어서 한진중공업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을 비롯해서 장관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한진중공업 문제가 대단히 상징적인 노사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정리해고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고 이게 또 당사자들한테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한 2년 전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에도, 대개 보면 정리해고의 대상자들이 40·50대 가장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정리해고를 당하고 나면 40대, 50대 가장들 특히 자녀들이 이제 막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한참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런 시점에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면 한 개인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쌍용자동차 때도 쌍용자동차의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노사가 어떤 합의점을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보면 약 900명 정도가 정리해고 대상자였는데 이분들이 정리해고되는 과정에서 아마 회사가 평균 한 5000만 원 정도 연봉, 사실 이것은 기본급으로 따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업, 특근까지 다 넣은 연봉 개념으로는…… 회사가 잘되면 잔업, 특근까지 다 하는 거고 못 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00명 정리해고하는 데 약 450억 정도 이렇게 경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손실이 3000억입니다. 7, 8년을 그냥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정말 노동조합도 회사의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고 회사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서 쌍용자동차 15명이나 목숨 잃었습니다, 자살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저는 지금 한진중공업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 회사가 부도덕하다는 게 이 회사는 자본잉여금이 1조입니다, 1조. 1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다음에 제가 이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사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하루에 손실이 얼마 납니까?' 4억씩 난다고 합니다, 순손실이. 지금 약 180일 됐습니다. 180일이면 얼마입니까? 70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170명을 해고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연봉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접비용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170명이면 1년에 많아 봐야 60억 정도입니다. 60억, 70억 정도입니다. 지금 손실 난 것만 하더라도 10년치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회사 측의 사정, 법과 질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져 버리고 정말 살인에 가까운 해고를 자행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 이번에 장관께서 다녀오신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왜 진작 이렇게 노동부에서 그런 노력을 못 하느냐,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노사 문제에 다 개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는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에 4억씩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잘라야 되겠다 이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본적으로 한진중공업 노사가, 특히 회사 측이 성의 있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뢰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선 회사가 회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 경영상 해고를 수용하되 정당성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구했으니까 따르고 회생을 위해서 노사가 노력해서 회생하면 우선적으로 반드시 재고용한다라는 기업 구조조정의 모델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 사례는 바로 한국GM의 경우가 그렇게 해서 극복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 그냥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장관님처럼 그렇게 법원의 손에 맡겨졌으니까 다 기다려 보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다리자는 게 아니고 수용하고……

○홍영표 위원 노사 문제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회사는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노사간의 갈등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약 700억 정도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70명 이분들이 같이 가서, 회사를 회생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 하더라도 10년치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장관님께서 더 적

극적인 역할을 할 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고의 문제를 원칙과 법과 질서,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한진중공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유성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장관님께서 정말로 좀 해고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물론 고용노동부의 할일이 많겠습니다마는 현안에, 그렇게 지금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 사업장의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최저임금 미만 실태 파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문의하여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지난 2010년 노동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의 차액은 7182억,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더하면 지난 10년간 총 4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4조 7000억 원 엄청난 금액이지요. 이 금액이면 요즘 대학생들이 정부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반값 등록금 실현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임금 4조 7000억 원을 훔쳐갔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서 빚어지는 문제점,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어려운 점들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입수를 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장관님 청문회 때 최저임금 법제화된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린 것은 고작 6건이고 실제 법원에서 사법처리된 것은 55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청문회 이후에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사실 파악을 좀 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법처리 결과를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문제로 생각해서 기소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한 지 꽤 됐는데요. 아직 파악도 정확하게 못 한 것은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하루 빨리 파악을 좀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최저임금 문제는 그 결정 절차와 금액에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있으나마나 한 처벌 규정이에요. 실제는 고발되어도 후에 권리 구제가 되면 벌금을 물리지 않거나 물린다 하더라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동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건 중에서 사법처리 의뢰한 것이 1113건이고요. 그중에서 기소 송치된 것이 107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고의적·상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를 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줘야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가 기업의 이윤 수준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얼마나 방문하는지, 위반 시 벌칙이 얼마나 과중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국제노동기구에서 보고서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칙도 경미하고 감독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위반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적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합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유의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조금 전 장관께서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장 낮은 것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작년 경우에는 2%대였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 그전 2009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10년간 상승을 해서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OECD국가 중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OECD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비교평가는 주장하는 학자가 다 다르고,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기준별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꽤 깁니다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홍희덕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봤을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 차액은 예산을 우리가 마련해서라도 채워 주는 것이 옳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해서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는 지금 우리 최저임금 수준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최저임금의 중요성이라든지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열악한 처지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계속해서 더 얘기를 해 보면,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생산량도 많이 늘었고 매출도 많이 늘었지요. 그런데 뭐가 안 늘었느냐 하면 사람이 안 늘었습니다. 자동화설비 등으로 다 바꾸는 거지요, 투자를 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다 세금공제 받고 그러는 거지요.

요새 기름값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정유회사는 다 장치산업인데 그거 옛날에 돈 잘 벌 때 다 세금 갖고 투자해 갖고 지금 앉아서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세금제도를 바꾸자…… 뭘로?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고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고…… 대기업은 고용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를 바꿔 나가는 것을 우리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안 만들어 주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해라. 그러면 그만큼 너희 세금에서 혜택을 보게 해 주마. 과거 식의 장치산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제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거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형태의 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이 이윤을 남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일자리를 얼마만큼 더 많이 만들고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고용창출투자세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부부처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또 외투,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법과 저

촉이 되는 부분들이 항상 정부하고 말썽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내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나서서 좀 풀어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외투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그것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점을 많이 줘서, 그런 규제나 이런 복잡한 부분들도 관련 장관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외투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을 증가하게 할 수 있다면 앞장서서 그런 것도 풀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또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면 외국인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걸림돌을 풀어 주는 것이 맞고 다만 대전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그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위원들이 다 고용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가치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이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선도를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진섭 위원 지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운영하는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면서 최저임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한계기업, 어려운 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원청이라고 할까, 하여튼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최저임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최저임금을 막연히 올린다 이렇게 하면 그 시스템이 또 무너지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적정한 동반성장 또는 이윤 재배분 등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갖고는 최저임금 문제도 못 풀고 비정규직 문제도 못 푸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아까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천 지역의 하이닉스반도체 방문을, 현장에 가서 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천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말하자면 자연환경보전구역에서의 공장 증설 관련된 규제방식을 총량 접근방식에서 일정 수준의 수질관리가 된다면 보완적인 방안으로, 공장 증설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협의가 됐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지체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바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질, 수자원 생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고칠 수 있고 해서 제가 환경부하고 지경부에다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도 기본적으로 제때 제값을 주게 하는 것이 저는 동반성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사항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미리 한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김성순 예.

○정진섭 위원 제가 여기서 있을 때 정규직·비정규직 이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양분법으로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정규직·비정규직. 그런 것보다 반정규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명칭도 좀 바꾸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정규직·비정규직 그러면, 정규직은 좋은 것이고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제도의 개선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3년 동안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함축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

무 큽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네이밍(naming)을 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적정성 문제도 포함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좀 연구를 하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정진섭 위원 하나 실태조사를 해 주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소싱을 해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으로 운영하는 이 산업시스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 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사 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예.

……

○정진섭 위원 사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 문제는 대개가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주고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아웃소싱해서 떼어내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합돼 갖고 굉장히 어려운,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태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돼야 그 바탕 위에서 이게 산업시스템에 관한 문제니까 이걸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안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우리 젊은 애들 또 노동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 이거지요.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자, 그래야 우리 위원회 또 우리 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했다. 그리고 고용창출도, 물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고용창출도 요 근래에 많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투자를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가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냈으면 하는 염원에 비추어 볼 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 언론 지상에 나온 통계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은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봤더니 준 것은 아니다,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일자리가 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잡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홍보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그때 이야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의 배당률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이자율보다도 더 낮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또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투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장관님이 보시는 것도 그런 게 일리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편파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해진 위원 우리 고용부하고는 직접 관계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감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세 문제? 법인세 추가 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아니면 둘 중의 하나를 유지하고 하는 정책이 투자와 고

용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지난번 독일에 갔을 때 제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금융위기 왔을 때 그 극복 방법으로 정책의 하나로서 감세 정책을 했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효과 없다. 철폐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길이라면 감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법인세가 내려가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동시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방에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아예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시적인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상시화하는 거지요?

○조해진 위원 예, 고용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그동안에 제조업 부분에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서비스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안에서도 많았고. 그래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고용,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적인 정책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부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각 안에서도 합의를 못 이루고 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저는 국무위원으로 일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측면 지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기업이 아예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를, 대학이든 전문계 고교든 간에 기업 스스로가 그런 학교 운영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학교를 반드시 학교법인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업 쪽에서 주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산업현장에 가장 부합되는 학교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계약학과, 주문식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사내대학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고 기업의 역할이 대학 설립·운영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 방향을 중점적으로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주도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김진숙 씨가 183일 고공 농성을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김진숙 씨 지금 신분이 뭡니까? 회사원입니까, 동시에 조합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오래 전에 해고된 신분으로 들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회사 직원이 아니고 그리고 조합원도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강성천 위원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습니까, 아니면 한진중공업 이전 법인에서 해고된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걸로……

○강성천 위원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습니까? 지금 현재 조남호 회장으로부터 해고됐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 법인에서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고된 것은 분명한데 어느 시점, 어느 사장, 회장 시절인지는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진중공업 이전에 해고됐고 전신, 그러니까 영도 사업장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으로 와서 지도

위원이 되어서 지도위원 자격으로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마 금속노조의 지도위원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 자격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진중공업에 소속된 상급 노조인 금속노조의 지도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정확한 겁니까? 정확한 건지 나중에 저한테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사실관계를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장관님, 본 위원은 공정사회가 근로자는 일한 만큼 공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정책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9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대졸자는 284만 7000원을 받았고 고졸자는 166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18만 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사실입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학력이 아닌 기술이나 능력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학력 차별이 사라지고 공정사회가 구현된다고 보는데 고용노동부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졸자의 임금 수준이 고졸자에 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높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나친 격차에서 비롯되는 생산성과의 괴리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임금체계에 있어서 직무급이라든지 직능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장관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우리 대학진학률이 지금 82%지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2009년도에 82%에서 작년도에는 79%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것 사실상 학력거품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다른 OECD 평균에 비하면 한 30%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강성천 위원 학력거품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높은 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거품을 걷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결국에는 학력을 높이는 경우에는 공부가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가게끔 하는 것이 맞고 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게끔, 즉 노동시장에 먼저 진입한 뒤에도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 구조, 이런 부분들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고학력이 지금 고등실업을 낳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반드시 고학력이퀄 고등실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의 학력은 오히려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을 초래해서 사회 변별력을 가져오는 데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높은 진학률은 조금 과잉된 측면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OECD 평균이 56%입니다. 우리 청년도 이 수준에 맞춰서 일자리를 유인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선 간판보다는 능력과 실력 위주의 사회가 정착이 되고 또 숙련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대되게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을 수 있게끔 각종 복지후생 그리고 사회적인 예우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고, 어디까지나 평생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숙련공에 대한 훈련계획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종전에는 주로 실업자

위주의 훈련 그리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이런 훈련 위주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점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위주로 많이 중점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평생 동안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게끔 훈련 부분들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가 또 한 바퀴 돌았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꼭 필요하신 분만 남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정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총 111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이들 안건을 일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정진섭 위원 위원장님, 장내정리도 좀 하고 장관 해결할 문제도 있고 잠깐 쉬시지요.

○위원장 김성순 장내정리 좀 하자고요? 쉬자고요?

○정진섭 위원 해결할 문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강성천 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정권·이한성·여상규·최철국·김성곤·박대해·주광덕·조전혁·신영수·임동규·이해봉·윤석용·안효대·김성태·조윤선·이화수 의원 발의)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이윤성·허범도·김성회·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강성천·이경재 의원 발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창수·심대평·류근찬·김용구·박선영·이재선·이명수·노영민·정하균·권선택 의원 발의)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재윤·김춘진·박은수·이찬열·신낙균·장세환·장병완·양승조·최영희·안민석·김영진·이미경 의원 발의)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장병완·이석현·최종원·권영길·정동영·박영선·조영택·안민석·서갑원·최문순·정장선·강창일·전병헌·김성곤 의원 발의)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홍희덕·최문순·김진애·정장선·이찬열·박은수·김상희·홍영표·추미애·이용섭·김재윤·강기정·원혜영 의원 발의)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금래·김소남·장윤석·황영철·유원일·박대해·이한성·허태열·이은재·이경재 의원 발의)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466)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41)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박보환・김금래・임두성・유성엽・이화수・안상수・박종희・정해걸・박상돈・이명수 의원 발의)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심대평・서종표・김장수・류근찬・유승민・김무성・김성회・송민순・강성천・이진삼・변웅전・권선택・정영희・임영호・김창수・이재선・김낙성・황우여・이화수・이명수・이영애・김충조・정하균・안상수・백성운・강성종・김성수・박종희・박선영・김옥이 의원 발의)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강명순・고승덕・이한성・박기춘・안상수・김태원・유원일・김성수・임영호・남경필・원희목・우제창 의원 발의)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강성천・박대해・박준선・안효대・유정복・이명규・이종혁・이학재・이화수・한선교 의원 발의)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강창일・김영진・송민순・김동철・주승용・최철국・박은수・노영민・양승조 의원 발의)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최문순・유원일・이찬열・김영진・김재윤・안홍준 의원 발의)

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정장선・김진애・최문순・이강래・김춘진・우제창・조정식・김동철・이낙연・김재균・양승조・안규백・이찬열・김상희・전혜숙・신학용・이성남・박선숙・최영희・최규성・백재현・박은수・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810)

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최철국・박은수・백원우・최영희・이미경・조정식・김영록・안규백・박주선・양승조・최문순・전현희・김재윤 의원 발의)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신학용・이한성・진성호・조진래・정의화・이화수・권성동・성윤환・김성태 의원 발의)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세연・김우남・안민석・안형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용섭・이찬열・이한성・이화수・조배숙・조영택・조원진・최규식・최영희 의원 발의)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이성남・조경태・이찬열・양승조・송민순・최영희・신낙균・조정식・이정현・박영선・김재윤・김성곤・박은수・홍영표・이미경・최재성・이춘석・최문순 의원 발의)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안민석・조승수・신학용・강창일・김재균・김재윤・오제세・백재현・서갑원・김성곤・추미애・조영택 의원 발의)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우남・박은수・최철국・이명수・이인기・유원일・우제창・전현희・노영민・이낙연・양승조・김성곤・유선호 의원 발의)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재윤・김춘진・박은수・이찬열・신낙균・장세환・장병완・양승조・최영희・안민석・김영진・이미경 의원 발의)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유선호・박영선・이윤석・전병헌・홍희덕・이춘석・이찬열・이미경・신학용・김진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7)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박순자・김효석・주광덕・이인기・유성엽・김태원・안홍준・이한성・권영진・최경희・임영호・유원일・홍일표・강성천・원희룡・이정선 의원 발의)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전병헌·김영진·박영선·박우순·김재윤·김진표·최인기·김동철·강창일·김재균·강기정·김영록·안규백·안민석·정동영·신낙균·문학진·이종걸·최문순·송민순·정세균·홍영표·추미애·원혜영·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78)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용구·임영호·김영록·우제창·이용섭·김춘진·김창수·최문순·정장선 의원 발의)

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동철·박영선·정동영·오제세·천정배·이종걸·전병헌·원혜영·강기갑·홍재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41)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강용석·김정권·현경병·신상진·이한성·최병국·이용희·원희목·김정 의원 발의)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경재·정해걸·이두아·윤영·조원진·황우여·이명수·김광림·김금래 의원 발의)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이상민·심대평·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이성헌·박선영·박상돈 의원 발의)

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손범규·김소남·박준선·장세환·이화수·김금래·김옥이·이정선·황영철 의원 발의)

38.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인기·유승민·성윤환·박종근·이찬열·유기준·임영호·박대해·정갑윤·구상찬·이한성·조승수 의원 발의)

3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강기정·양승조·최재성·조경태·김재윤·김동철·최규식·김효석·안민석·이종걸·전혜숙·송민순·신건·박선숙·문학진 의원 발의)

4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강석호·이종혁·전여옥·윤상현·임동규·이명수·백성운·장광근·나성린·홍영표·고승덕 의원 발의)

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장병완·이석현·최종원·권영길·정동영·박영선·조영택·안민석·서갑원·최문순·정장선·강창일·전병헌·김성곤 의원 발의)

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김세연·김정권·유성엽·김우남·유정현·이해봉·이종혁·정해걸·임동규·강기갑 의원 발의)

4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김동성·안홍준·김태원·박종희·홍장표·김춘진·송영선·양승조·신낙균·임동규·정갑윤·김동철·양정례·유정현·이한성·정하균·김영진·이진삼·강석호·정장선·이정선·최영희·최인기·김학송·서청원·김희철·홍정욱·김소남·김정훈·김성곤·백성운·박보환·안상수·손범규·오제세·이혜훈·장세환·심재철·배은희·김부겸·강성천·나성린·이해봉·정해걸·김효재 의원 발의)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상수·유성엽·박종희·이명수·강석호·이화수·정해걸·조해진·김금래·박상돈·김성태·박보환 의원 발의)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김상희·김재윤·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최문순·원혜영·유성엽·박대해·이명수·이화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9)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홍장표・이진복・이한성・최병국・임두성・최구식・안상수・정미경・정해걸・이해봉・오제세・김세연・이성헌 의원)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김우남・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김재윤・변재일・유원일・최문순・강성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4813)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손숙미・원희목・강명순・임두성・홍정욱・심재철・박영선・김정권・유재중・김효재 의원 발의)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임동규・유성엽・김무성・손숙미・김성수・윤영・강명순・윤석용・이성헌・한선교 의원 발의)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이해봉・남경필・홍희덕・김세연・이한성・신상진・김성태・조승수・서갑원・유기준・황영철・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1)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재윤・정영희・정의화・김영선・이성헌・김태원・안홍준・정수성・이한성・황영철・이인기・신상진・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5)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이찬열・안민석・송영길・신건・양승조・변재일・전혜숙・박은수・원혜영・김우남・강기정・이미경・송민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7423)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김동철・김영진・김우남・김재균・박선숙・박은수・양승조・우제창・원혜영・유원일・이찬열・이한성・조영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7619)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박대해・박순자・이영애・이해봉・현경병・정병국・이한성・조문환・원희목・김성태 의원 발의)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최문순・양승조・조승수・권영길・유원일・강기갑・곽정숙・이정희・김재윤・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4)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영환・김재윤・이정희・조승수・조경태・주승용・홍희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5)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김재윤・김소남・임영호・노영민・김춘진・박영선・최영희・조승수・최규식・강기정・조영택・유원일・김충환・김동철・김영진 의원 발의)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권선택・김성곤・김우남・박선숙・박은수・백재현・송민순・이미경・이석현・이용섭・이찬열・조승수・조영택・최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6)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원희목・이인기・조배숙・김성수・이해봉・이정선・손숙미・이성헌・김낙성・김정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777)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권영진・유성엽・이해봉・조승수・원희목・현경병・이미경・우제창・홍영표・황영철・김성태・김혜성・이한성・홍희덕・황우여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김소남・추미애・박준선・신영수・장세환・이화수・김금래・김옥이・이정선・손범규・황영철 의원 발의)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재윤・김춘진・박은수・이찬열・신낙균・장세환・장병완・양승조・최영희・안민석・김영진・이미경 의원 발의)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학용・홍희덕・전혜숙・조영택・조승수・유정현・백재현・안민석・강창일・이성헌・조정식・유원일・김재윤 의원 발의)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박기춘・이찬열・김영진・최규성・최규식・박은수・홍영표・정범구・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280)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박은수·주승용·이춘석·최철국·이용섭·김재윤·양승조·김상희·안민석·이찬열·백원우·홍영표·이성남·추미애·최종원·최재성·이미경·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757)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정권·오제세·강용석·배은희·안효대·김유정·백원우·김태원·홍정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08)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최규성·박은수·강창일·김세연·권선택·홍희덕·김우남·김상희·송민순·이미경·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74)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조승수·전혜숙·홍희덕·강기갑·이인기·김영진·곽정숙·안홍준·정동영·김재윤·홍영표·권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06)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박은수·주승용·이춘석·강기정·정범구·백재현·이미경·김상희·장병완·김재윤·백원우·김유정·양승조·추미애·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2)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강석호·이낙연·신학용·전병헌·신상진·이찬열·최규성·박은수·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54)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김혜성·조배숙·이정선·신학용·김태원·배영식·김소남·정영희·김정·윤상일 의원 발의)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강용석·김정권·현경병·신상진·이한성·최병국·이용희·원희목·김정 의원 발의)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8.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홍희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박준선·임동규·김금래·김성태·윤석용·이윤성·장광근·김선동·이정선·정양석 의원 발의)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신성범·정갑윤·박상돈·김창수·심대평·안형환·조문환·박희태·양승조·원희룡 의원 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이한성·강석호·김효재·정해걸·강명순·김유정·이춘식·한선교·이정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7411)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부겸·임영호·조승수·김재윤·김성곤·김효석·김상희·김우남·양승조·박선숙·유원일·박선영 의원 발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정장선·김진애·최문순·이강래·김춘진·우제창·조정식·이낙연·김동철·김재균·양승조·안규백·이찬열·김상희·전혜숙·신학용·이성남·박선숙·최영희·최규성·백재현·박은수·원혜영 의원 발의)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조원진·김성수·홍정욱·손숙미·이명규·이한성·원희목·이해봉·박보환·김효재 의원 발의)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나경원·김효재·정갑윤·원희목·김태원·강명순·강창일·홍준표·이은재 의원 발의)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신학용·이한성·진성호·조진래·정의화·이화수·권성동·성윤환·김성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8179)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강기갑·전현희·이한성·강기정·원희목·이용경·양승조·안민석·최문순·김유정·유성엽·조영택·조배숙·우윤근·김재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8223)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8451)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박준선·안경률·이애주·안홍준·박대해·이한성·황우여·권영진·박순자·권성동·최병국·박희태·윤상현·서병수·이범관·진영·구상찬·박민식·김학송·김무성·박종근·김성식·황영철·강석호·정진석·김장수·홍정욱·정의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2)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이성남·조경태·이찬열·양승조·송민순·최영희·신낙균·조정식·이정현·박영선·김재윤·김성곤·박은수·홍영표·이미경·최재성·이춘석·최문순 의원 발의)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손숙미·원희목·이정선·이인기·김소남·김효재·유재중·권경석·김을동·서상기 의원 발의)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김학송 의원 발의)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박순자·김효석·주광덕·이인기·유성엽·김태원·안홍준·이한성·권영진·최경희·임영호·유원일·홍일표·강성천·원희룡·이정선 의원 발의)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전병헌·김영진·박영선·박우순·김재윤·김진표·최인기·김동철·강창일·김재균·강기정·김영록·안규백·안민석·정동영·신낙균·문학진·이종걸·최문순·송민순·정세균·홍영표·추미애·원혜영·이찬열 의원 발의)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백재현·강창일·조정식·신건·이석현·이낙연·박은수·이춘석·최재성·최영희·김재윤 의원 발의)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소남·김정권·김세연·이진복·최병국·강길부·권영진·황우여·김태원·김금래 의원 발의)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강창일·박영선·이명수·원혜영·신낙균·유선호·강봉균·이화수·정동영·서종표·문희상·최종원·박은수 의원 발의)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 의원 대표발의)(김옥이·박준선·박민식·이한성·장윤석·유승민·박선영·이화수·이학재·김정훈·김충환·김을동·손범규·김성수·이종혁·정하균·윤상현·김장수·안홍준·이정현·심대평 의원 발의)

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경태·이윤석·이성남·김성곤·김재균·강기갑·유원일·이용희·김낙성 의원 발의)

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이경재·정갑윤·조진래·권영진·이진복·김세연·권경석·나경원·성윤환 의원 발의)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최철국·우윤근·원희목·송영길·박은수·양승조·최인기·김영진·최영희·백원우 의원 발의)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경석·김부겸·홍희덕·임영호·유성엽·이해봉·김을동·김용구·박선영·최규식·김효재·조승수·김창수·이은재·김재윤·권선택·류근찬 의원 발의)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이윤성·허범도·김성회·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강성천·이경재 의원 발의)

1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학용·홍희덕·전혜숙·조영택·조승수·백재현·강창일·이성헌·이찬열·정범구·박주선·김재윤 의원 발의)

1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신상진·현기환·권영진·박준선·원유철·강성천·강용석·정해걸·조진형·안형환 의원 발의)

1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김세연·송영선·안효대·강석호·조해진·이정선·손범규·박은수·강길부·심재철·이한성·고승덕·장윤석·장광근·전혜숙·임동규·이명수·정미경 의원 발의)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서상기·배영식·임동규·이한성·권영진·이해봉·고승덕·유성엽·백재현 의원 발의)

1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2.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이한성·이해봉·김성수·권영진·김성태·안홍준·신성범·윤상현·나성린·임영호·이성헌·정병국·손숙미 의원 발의)

(17시38분)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정진섭 의원,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이종걸 의원, 이미경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5항까지 이주영 의원, 심대평 의원, 강명순 의원, 조원진 의원, 김재균 의원, 홍희덕 의원, 홍영표 의원, 전혜숙 의원, 정옥임 의원, 홍정욱 의원, 김춘진 의원, 김재윤 의원, 이성남 의원, 김유정 의원, 주승용 의원, 김상희 의원, 김성식 의원, 박주선 의원, 오제세 의원, 박순자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재선 의원, 강성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3항까지 서병수 의원, 이석현 의원, 신영수 의원, 이종걸 의원, 김성수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77항까지 김동성 의원, 이주영 의원, 김상희 의원, 홍희덕 의원, 박은수 의원, 안효대 의원, 손숙미 의원, 임두성 의원, 김선동 의원, 최영희 의원, 김재윤 의원, 임동규 의원, 홍정욱 의원, 유원일 의원, 김유정 의원, 김소남 의원, 강성천 의원, 홍영표 의원, 강창일 의원, 김혜성 의원, 박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홍희덕 의원이 소개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9항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99항까지 여상규 의원, 정옥임 의원, 오제세 의원, 홍영표 의원, 박순자 의원, 김소남 의원, 김춘진 의원, 홍정욱 의원, 이성남 의원, 손숙미 의원, 정의화 의원, 김성식 의원, 박주선 의원, 강기정 의원, 정갑윤 의원, 최규식 의원, 김옥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5항까지 김춘진 의원, 곽정숙 의원, 최구식 의원, 전현희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08항까지 정진섭 의원, 홍영표 의원, 이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및 제110항 신영수 의원, 이종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1항 정부가 제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2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11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

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제47항・제50항・제59항・제7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의원 서면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제28항・제67항・제83항・제10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크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9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관악갑 김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성 근로자에게 한 달 간 유급의 영아 육아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후 양육과 경력단절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을 배려하고 육아에 관한 부부의 공동 노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는가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출산이야 여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만 양육도 여성에게만 넘겨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직장복귀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010년 산전후 휴가를 받은 여성은 7만 5000명입니다. 여성의 육아휴직자는 4만 200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자는 불과 819명이고 산전후 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단 1%만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출산과 육아는 부부 공동의 역할입니다. 혹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아내를 남편이 배려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매우 짧습니다.

2010년 10월에 EU 의회는 출산에 따라 2주간의 남성 유급휴가 제공을 공식적인 지침으로 의결해서 각국 정부보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스웨덴도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으며 프랑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해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 단위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남성 영아육아휴가의 재정소요는 연간 1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지난한 산전・산후휴가를 신청했던 7만 5000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모두가 신청했을 때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더하여 남성 영아육아휴가까지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지출 체계를 놓고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양육이 부담스러워, 경력단절이 두려워 아이 낳는 것에 대해 부부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미 첫 아이를 낳는 여성의 연령이 이미 30세가 넘었습니다.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김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 제65항 및 제7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의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진섭 의원 저도 발의했는데 저한테는 물어보시지도 않으시나요?

4항부터, 제일 위에 있는데……

○위원장 김성순 서면으로……

○정진섭 의원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다만 의사일정 제52항을 대표발의하신 임두성 의원께서는 2010년 9월 9일 자로 의원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항 및 제11항, 제77항, 제105항, 제111항, 6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5항은 지난 제294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법률안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에 제출한 법률안은 지난해 1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노조전임자가 사업주가 아닌 자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금품을 보수로 의제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휴직이나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를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에 제출한 법률안은 사업주가 불분명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았던 항운노조 하역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로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산재보험 가입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공동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하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량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휴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후 그 근로시간을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연장근로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법률안은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고치는 등 법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111건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전문위원 원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소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1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준비된 요약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핵심적 결론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주영 의원안은 자유무역지역에 별도의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력과 기능의 중복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정부 제출안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법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진섭 의원안은 기존의 특례보험료제 폐지, 소멸시효 적용 제외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이상민 의원안과 이학재 의원안은 현행 가산금 제도의 필요성과 최초연체금, 연체금 가산 단위기간, 부담이율, 연체금 부과한도 기간의 적절성 등 각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상황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종걸 의원안은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경 의원안은 고용보험료율 국회 승인·확정에 대하여는 현행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방식, 유사 입법사례, 고용보험료율의 국회 승인·확정권의 효과성과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안 2건은 고용보험료 부담주체 변경에 대하여는 현행 보험료징수법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의 도입은 그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5항까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모성보호 관련 사항과 그 이외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모성보호 관련 개정안입니다.

이주영·홍정욱·김춘진·이성남·김성식·박순자 의원안은 추가적인 지원보다는 현행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전혜숙 의원안의 출산 여성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안정사업의 취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쪽 상단입니다.

강명순·홍영표·정옥임·김유정·박주선 의원안은 구체적인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 및 근로자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순 의원안의 유·사산 휴가는 임신 초기에 급여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사항 이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대평 의원안은 군인연금 미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가입 허용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조원진 의원안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은 이미 2009년 7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어 논의 실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균 의원안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덕 의원안은 사립학교 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사전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안의 청원경찰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 제외는 타 직종의 피보험대상자도 동일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유급휴일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완화, 소정급여일수의 확대 등은 재정여건상 대폭적인 고용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오제세 의원안 중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은 군인의 사회복귀를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주선 의원안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제출과 기금운용 결과의 일간신문 공

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정희수 의원안의 고용창출지원금 차등 지급은 현행 시행령이 입법취지를 반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안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의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재선 의원안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이 법규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조치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강성천 의원안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는 타당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와 정년개선실적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필요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3항까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병수 의원안의 학력에 의한 고용상 차별금지 및 고용상 차별에 대한 처벌은 개별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석현 의원안은 고용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신영수 의원안은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규정 및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해고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별도의 규정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성수 의원안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불필요한 정보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차별관행 정도를 분석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명수 의원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규정 순서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78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우선 모성보호 관련 개정안들입니다.

이주영·유원일·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전후휴가 급여의 완전한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및 기업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은수 의원안은 선언적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타 법과의 처벌규정의 차이로 인한 차별시정 및 피해구제에 혼란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효대 의원안의 유산예방휴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사유에 임신을 추가하고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병가제도의 신설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숙미·홍정욱·김소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기간이 필요한 불임치료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임두성 의원안은 결혼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제재효과를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동규·박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사산예방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산후휴가기간의 축소로 산후회복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유정 의원안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기간 연장은 해고예고수당의 증가에 따른 채용기피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성보호 이외의 근로기준 관련 개정안들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사업장 업무의 제3자 도급·용역 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홍희덕 의원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이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희덕 의원안 제50항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노사정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정의규정이 아닌 개별규정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동 의원안 제53항의 위반행위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명단공표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행동자유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김선동 의원안 제54항의 연차휴가 미 사용 시 평균임금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최영희 의원안 제55항은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인데 비진학 청소년의 근로시간 단축·제약 효

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김재윤 의원안 제71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중학생은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윤 의원안 제56항은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용역을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홍희덕 의원안 제59항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원일 의원안은 최저임금제의 완전한 정착 여부를 확인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김재윤 의원안 제62항의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시정명령제는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김선동 의원안 제64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주로 건설공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강성천 의원안 제65항의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상 비효율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홍영표 의원안 제67항은 악의적·반복적인 체불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강창일 의원안 제68항은 하는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최영희 의원안 제69항은 열악한 경영여건, 법준수 능력, 행정상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범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안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홍희덕 의원이 소개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행 기준이 국제적 규범에 일치하고 있어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중소기업에 한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99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상규 의원안은 가족해체 및 노인인구의 증가 경향 등을 고려하여 형제자매·조부모에 대해서도 가족돌봄제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고, 정옥임 의원안은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부담과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제세·김소남·정옥임·홍정욱·이성남·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재정부담 및 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할 때 7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정의화·김성식·박주선·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자 의원안은 근로계약기간의 자동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춘진 의원안 제87항은 외국 사례를 참고로 정책적 수단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김춘진 의원안 제89항은 별도로 산전후 보호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옥임 의원안의 근로자 모집 시 사진 제출 금지 조항과 같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차별방지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일반적인 차별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손숙미 의원안에서 가족간호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이며 최규식·김옥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보다는 과태료로 규정하여 금전적 제재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5항까지 산업안전보

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춘진 의원안과 곽정숙 의원안은 현행법의 입법취지, 근로제한 대상 질병의 확대 및 근로권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전현희 의원안은 현실성, 외국의 입법례, 현행 외국인 지원제도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명수 의원안의 도급사업주에 대한 의무부과는 법리 등을 고려하되 정부안의 유사내용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 상향과 건설업 일용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제도 개선 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체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지나 일부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08항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진섭 의원안은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별도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체계상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홍영표 의원안의 입법취지는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체당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기금부실 문제와 상당 규모 부담금 비율 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화수 의원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와 확인 결과의 통지 등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실제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제110항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영수 의원안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종혁 의원안에서는 건강보험급여지원 등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및 장애인고용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생계형 영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정부가 제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인데 일부 조항은 표현의 명확성과 입법체계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수정·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및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필요성과 개별조항의 적절성 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순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2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홍희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홍희덕 위원입니다.

40항 고용정책기본법, 신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데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신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별 일자리공시제를 통해 지역에서 적극적 고용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해고신고제와 중복되는 대량고용변동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신고제는 벌금이 없지만 고용정책기본법의 대량고용변동신고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사업주의 대량해고 시 신고제를 없애고 이에 대한 과태료 역시 없앤다면 해고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고용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과태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체험관이라는 한국잡월드에 대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무려 2000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 분당에 짓고 있지요? 이미 올 초부터 한국잡월드에 대해 '일자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돈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이 아니라 고용안정 계정이라면서 실업급여 지출과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용안정 계정으로 2000억 원의 호화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요즘처럼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잡월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에 앞서 한국잡월드 계획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일부 긍정적인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법안입니다. 바로 '탄력근로시간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한두 시간 조정하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는 탄력근로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의 탄력근로제는 일감을 몰아서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몰아서 할 시기의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여하튼 전체 근로시간만 맞추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근무시간은 얼추 비슷할지 모르지만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측면에서 봐도 고용안정이 위협받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동일 시간을 근로해도 수당이 없어져서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정부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이것 상정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다음에 84항 남녀고용평등법,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고용 자체도 있지만 그 고용이 지속적인가 아닌가의 문제, 즉 고용안정과 고용보장의 문제입니다.

정규직이 줄고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고용의 질보다는 일시적인 고용지표 향상을 위해 단기간의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청년인턴제와 희망근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법안에 있듯이 노동자가 계약갱신에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퇴직금 정산 시에도 불리함이 있다는 점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제2의 희망근로, 청년인턴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내용은 도급·용역·위탁 계약 등에 의해 경비 및 청소노동자들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로 하여금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노동자들의 보건을 유지하려는 것인데요. 오늘 법안 대체토론에서 계속해서 제가 반대 토론만 했는데 이번에는 찬성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청소노동자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 초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투쟁부터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에서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 청소노동자들은 존재하면서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변한 식사장소마저 없어서 화장실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청소노동자들의 인간적 권리와 보건을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매우 좋은 법안인데, 하나만 첨부하고 싶습니다.

의무부과를 한 후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처벌규정까지 함께 넣어서 법안을 시행한다면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아, 그러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몇 가지만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월드, 한국 종합직업체험관과 관련해서 투자금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업이 한 1만 개가량 됩니다만 지금 중고등학생에게 알고 있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을 적으라고 하면 정말 몇 개 안 나옵니다. 직업의 세상을 너무나 모르고 그냥 성적에 따라서 진학을 하게 되고 취업 현실로 나가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시절에 직업의 세계를 알고 자기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종합직업체험정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결코 초호화 건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용, 즉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계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투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 부분은 원래가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탄력적 근로를 유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서면으로 원하는 경우에 선택 가능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 때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이미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지금 정부가 낸 탄력적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정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탄력적 근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이 바쁠 때는 쓰고 그다음에는 휴가를 저축해서 필요한 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상당히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좋게 보이는데 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 반대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는 걸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좋은 제도라고 하면 노사 공히 더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끌어내서 정부가 입법안을 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해서 너무 노동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상당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또 초단기 계약을 하는 그런 근로조건을 사용주들이 선호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적어도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총 1600시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2000시간이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이용되고, 지금 3개월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1년으로 확대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3개월을 몰아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 되지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아주 단시간, 단기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들을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선 질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초과근로를 탄력적으로 할 때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 지금 잔업수당이라든지 야간근로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하고 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할증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들에서는 장시간 노동, 초단기 노동계약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하는 점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하는 점들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를 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자보호법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김상희 의원의 가사노동자보호법은 근로기준법 또 고용보험법 또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등 여러 법에 걸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침 장관님께서 참가하신 이번 2011년 6월 16일 ILO 총회에서도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함께 찬성을 던져 주셨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 근로계약들이, 근로조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계약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에 있어서 계약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 또 산업재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해당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 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협약에 찬성은 하였지만 이 법을 구체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협약에 찬성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의 법적인 제도개선을 발을 들여놓으면서 갈 수 있도록 이 법안 검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했는데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최근에 노동부가 고용보험요율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인상을 고용보험위원회하고 심의해서 0.9%에서 1.1%로 0.2% 인상을 시켰습니다. 고용보험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국회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인상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도 거치지 못한 채로 통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두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아주 심도가 깊은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장관님 답변을 조금 듣고……

○위원장 김성순 아, 장관께서 항목별로 짧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짧게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대한 감축 부분은 동의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조정하는 것이 업무량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수당이 조금 줄지만 업무량이 적을 때는 휴일을 갈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 삶의 선진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설득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사노동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렵게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가사노동, 특히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라는 경우가 지금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인권이라든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여건의 성숙 이런 상황을 봐 가면서 최대한 빨리 하되 너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고.

고용보험요율의 결정·변경 시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현재 법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되고 거기에는 노사가 참여를 하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요율을 설정·운용하고 또 정치적 개입이 되지 않고 전문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 형태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직접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례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별로 짧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중에서 탄력적 근

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지금 51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정조차 반대합니다.

지금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대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도 보면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사람이 26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근로시간도 61.7시간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연간 근로시간이 2256시간입니다.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1.3배나 깁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시간 노동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금 독일 같은 데에서 보면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평균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일 1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고 1주 최대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근로시간의 상황이라든지 또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 이런 것과 함께 시행을 해야지 느닷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금 도입하게 되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중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57조에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도 지난번 어떤 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 82%가 아직도 연차를 다 못 쓴다, 평균 연차 12.9일 중 5.8, 절반도 쓰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들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자 이런 취지가 오히려 악용이 되어서 오히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를 시키고도 할증임금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이것은 시기상조이고 그래서 상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진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진섭 위원 법안심사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내용들을 쭉 내놓고 계시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법률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타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표준안을 정부가 내주시면, 이것이 어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산전휴가, 산후휴가가 어떻고 그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전부 위원님들이 한 부분 한 부분씩 뜯어서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다 따라가다 보면 법률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보고도 '아,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가는 거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러 곳과의 관계를 종합해서 하나 안을 제시해 달라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성남에 짓고 있는 잡월드 때문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여기 있을 때 보니까 이상수 장관님 계실 때 고용안정센터를 아주 요지에 비싼 가격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셨습니다. 그 돈이나 그 돈이나인데, 그때는 그것은 도대체 얼마에 사들였는지, 규모가 어떻고 평당 가격이 얼마씩이나 되는지, 지금은 얼마 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111건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112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 대상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일정, 진술인 선정 등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건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2항까지 110건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 오후 2시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의결이 각각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성천	김성순	김용구	손범규
이미경	이범관	이정선	정동영
정진섭	조해진	홍영표	홍희덕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김성식 김형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전문위원	원창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차관	이기권
고용정책실장	이재갑
노동정책실장	조재정
기획조정실장	정철균
노동시장정책관	이재흥
인력수급정책관	한창훈
직업능력정책관	하미용
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공공노사정책관	권혁태
정책기획관	신기창
국제협력관	심경우
대변인	안경덕
감사관	최수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류시문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출석 참고인

이재용(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박유기(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최우영(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

송덕용(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보고사항】

○위원 사임

사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순자	한나라당	2011.6.21

○의안 회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박대해·권선택·허원제·김정훈·이한성·장윤석·박준선·여상규·홍일표·김태원·권경석 의원 발의)

6월 17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배은희·이명규·정두언·박보환·김정권·김무성·이정선·서상기·김학송·

손범규・김소남・나성린・현기환・이한성・
원희목・권영진・정의화・윤상현・김옥이 의원
발의)

6월 20일 회부됨